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지운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의의	5
제2절 범죄피해자의 지위	6
1. 의의	6
2. 범죄피해자 지위의 황금기	7
3. 범죄피해자 지위의 쇠퇴기	9
4. 범죄피해자 지위의 부활기	10
제3절 범죄피해자의 유형	12
1. 의의	12
2. 헨티히의 범죄피해자유형	13
3. 미야자와의 범죄피해자유형	14
4. 엘렌베르거의 범죄피해자유형	15
5. 멘델존의 범죄피해자유형	16
6. 샤페의 범죄피해자유형	17
7. 기타 범죄피해자유형	18
제4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책무	19
1. 국가의 책무	19
2. 국가의 책무	20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4. 국민의 책무	22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23
제1절 의의	23
제2절 영국	24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24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25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26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29
제3절 미국	31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31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35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36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39
5. 범죄피해자대책실의 활동	42
제4절 독일	44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44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45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47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50
제5절 일본	55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56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7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59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60

제6절 프랑스·뉴질랜드	66
1. 프랑스	66
2. 뉴질랜드	71
제4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방향	77
제1절 의의	77
제2절 범죄피해자 지위보장과 피해회복 지원	78
1. 의의	79
2. 형사피해자의 지위보장	79
3.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	85
제3절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	87
1.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	87
2.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의 방향	90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표 차례>	
< 표 3 >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운용상황	59
< 표 4-1 >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죄종별)	88
< 표 4-2 >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활동별)	88
< 표 4-3 > 2008년 SMS통지시스템 통지 현황	8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헌법(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은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규정하였고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범죄피해자학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조용하던 현실분위기에 비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보여 진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던 일반원칙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¹⁾

1950년대 이후에 범죄피해자가 범죄학과 형사정책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고,²⁾ 1960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 범죄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 많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범죄피해자학이 소개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사실학으로서 피해자학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체계상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이 후 법적·제도적 정비

1)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33면.

2) 형사상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진보(損害填補) 내지 원상회복제도(Victim Restitution)가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김일수,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와 기능”, 「피해자학연구」 제2호, 1993, 3면).

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립되어 다양한 형사학관련문제의 일부로서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마련되었고, 1992년에 한국피해자학회의 창설을 시점으로 더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³⁾

범죄피해자의 유형은 범죄의 유형만큼 다양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정책은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은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범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범죄의 생물학적·환경적 원인과 범죄원인에 근거한 대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범죄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의 연구에 치중되었다. 범죄에 관한 연구는 간접적으로 법집행과정에서 입게 되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의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는 범죄가해자와 범죄피해자이다. 민사절차에서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의 대립을 당연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민사절차에서의 대립관계에 관여하는 법원은 제3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사절차에서는 당사자처분주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적 당사자인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는 제3자와 같은 지위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당연시되어 온 사인(私人)에 의한 복수의 금지와 국가의 형벌권 독점 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배제되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은 국가의 책무가 아니었다.

3)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28면.

그러나 최근 법집행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대 국가의 법제도적 관심이 범죄피해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형사법의 연구 분야가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중요한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법집행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관여해야 하고, 이러한 국가의 활동은 선택적인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이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검찰이 중심이 된 법무부의 관심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연구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다 더 국민의 범죄의 예방과 방지에 밀접한 경찰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를 검찰 못지않게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판단은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경찰의 역할증대와 함께 경찰의 미래상을 발전적으로 형성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피해회복을 위한 현대 사회의 요청에 경찰이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법령과 제도를 비교하고, 우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범죄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세계적 조류를 밝히고(제1절), 범죄피해자의 지위(제2절)를 살펴본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유형(제3절)에서는 헤티히 등 학자들이 구분하는 범죄피해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책무를 고찰한다.

제3장은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정책으로 영국(제2절)·미국(제3절)·독일(제4절)·일본(제5절)·프랑스·뉴질랜드(제6절)의 범죄피해자보호정책에 관하여 역사·보호제도·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지위 보장과 피해회복 지원(제2절)을 살펴보고,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제3절)에서는 현재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새롭게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할 경찰의 정책을 제시한다. 제5장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정책을 다루는 각종 국내외 문헌을 인용하는 문헌분석방법을 채택한다. 그리고 최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논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국피해자학회의 회원자격으로 일본 미토(水戸)에 있는 토키와 대학(Tokiwa University)에서 열린(2009. 8. 23 - 2009. 8. 29) 제13회 세계피해자학회의 심포지움(The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Victimology)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최신 동향을 참고하고자 주재경찰관이 송부한 보고자료(미국 2009년 7월 29일, 일본 2009년 8월 4일, 뉴질랜드 2009년 8월 6일, 프랑스 2009년 8월 20일 각각 자료를 송부함)를 각각 참고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의의

전통적인 범죄학과 형법학이 범죄인, 즉 가해자의 행위만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학 분야에서는 오로지 범죄자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배경과 원인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형법학에서도 역시 가해자의 행위만을 중심으로 범죄론과 형벌론을 전개해 왔고, 형사절차의 측면에서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든가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에 충실한 나머지 피해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의 기저에는 범죄행위란 범죄인 개인이 저지르는 규범위반행위이고 국가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지위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처벌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전통적인 형사정책학은 범죄자 개인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줄 수 없었고, 둘째,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최대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형사사법은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뒤늦게나마 깨닫

4) 민건식,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1992, 15면.

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고소인으로서, 그리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해야 하는가 하면, 법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소송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은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야말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자명하다.⁵⁾

제2절 범죄피해자의 지위

1. 의의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범죄와 관련하여 고찰할 때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범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이다. 그러나 가해자(범죄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졌다.⁶⁾ 형사소송법상의 보장은 가해자(범죄인, 피의자, 피고인) 중심이었으며 헌법상에도 가해자의 권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제도화 되어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는 고소권자 혹은 증인이라는 지위 밖에 부여되지 않았고, 헌법상의

5) 민건식, 위의 논문, 16-17면.

6) 범죄피해자는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긴 시간동안 국가로부터도 형사사법제도로부터도 ‘잊혀진 존재’였다(宮澤浩一, “犯罪被害者救済の現状と最近の動向”, 「法律のひろば」 5, 1999, 4면).

지위는 일반 국민의 권리에 포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사건의 내용, 가해자, 형사절차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실제로 가해자에게 지불능력이 없거나, 또는 소송제기의 복잡함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⁷⁾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협의의 개념으로 형법적 의미의 범죄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견해와 형법상 중요한 의미 있는 충돌이나 갈등 또는 분규를 실마리로 하여 이들과 관련된 일정범위 내의 피충돌자를 범죄피해자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이 법률적 용어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주가 확실해지는 전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범죄피해자를 범죄로 인하여 직접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연인과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⁸⁾

범죄피해자의 지위라고 하는 논의 내용은 등급을 연상시키며,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다른 형사절차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⁹⁾

2. 범죄피해자 지위의 황금기

7)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의 해결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협조자이고,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밖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없었으며, 반대로 가해자 측의 변호인 등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됨에 따른 제2차 피해와 그 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하는 제3차 피해에 의해 피해자는 더욱 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원, 2005, 19면).

8)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 52-53면.

9) 류전철, 위의 논문, 51면.

이 시기는 범죄피해자에게 본인, 그 가족, 그 자가 속하는 씨족에 의하여 '피의 복수'가 당연시 되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를 '범죄피해자의 황금기'라고 하기도 한다.¹⁰⁾ 고대 게르만 시대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족단위의 생활공동체에서 구성원의 단결을 토대로 이를 깨뜨리는 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족의 우두머리가 형벌권을 행사하였다. 부족간의 침해에 대해서는 페데(Fehde)라고 하는 공개적인 사적 복수가 동원되었다.¹¹⁾ 5세기 중반부터 9세기 말까지는 왕권이 강화된 시기로 개인간의 복수가 차츰 제한되었다. 즉 국가가 특정의 범죄행위는 여전히 부족에게 처벌을 맡겨두기 하였지만, 국가 스스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¹²⁾

그 후 유럽에서 복수를 대신하여 '속죄금'(Weregild)제도¹³⁾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고려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즉 가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동해보복(눈에는 눈, 이에는 이)사상이 배경으로 되어 있었다.¹⁴⁾

현재의 형사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지위가 강력했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고소, 사소(私訴), 부대소송 등이 그것이다.¹⁵⁾

10)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0면.

11) 게르만시대부터 일반화되어 특히 중세시대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성행하였던 페데는 혈족간의 유대관계에서 나온 것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복수를 범죄피해자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대에 범죄피해자는 범죄자를 직접 상대하여 갈등의 해결과 처벌을 하는 주체였던 시기이다. 이때의 범죄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란 지금의 관념처럼 개인(Individua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류전철, 앞의 논문, 55면).

12) 그러나 이 시대에도 피해자나 그가 속한 부족의 복수에 처벌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처벌을 통해 피해를 당한 종족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류전철, 위의 논문, 55면).

13) 속죄금은 범죄로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아니라, 그가 속한 부족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이해된다(류전철, 위의 논문, 55면).

14) 小川太郎, “犯罪被害者に對する國家賠償”, 「犯罪被害者補償制度」, 1976, 51면.

15) 류전철, 앞의 논문, 56면.

3. 범죄피해자 지위의 쇠퇴기

국가권력의 강화에 의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권한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국가에게 전속하게 되었다.¹⁶⁾

형벌의 중점이 사형(死刑)에서 자유형(自由刑)으로 전환되었고, 프랑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벌 및 형사사법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법제도가 확립되었다.¹⁷⁾ 이 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고,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민사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 결과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국가와 공중에 대한 범죄는 각각 민사법과 형사법으로 나누어 취급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은 오로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여, 개인의 권리보장은 국가의 권리행사로부터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¹⁸⁾

국가형벌권, 즉 형벌이 공적 제재수단이 된 이후로 범죄에 대한 사회규범의 반응(reaction)절차인 형사절차에서 당해 범죄의 피해자는 사실상으로는 범죄 상황의 (대립되는) 일방 당사자이면서도 제3자의 지위로 떨어졌다.¹⁹⁾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권한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피해

16) 류전철, 위의 논문, 56면.

17)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0면.

18) 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20면; 국가 형벌권의 형성에 의해 범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에서, 가해자-국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중재자에서 직접당사자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전철, 앞의 논문, 56면).

19) 근대의 형법과 형사절차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 특정한 권력이 나 이익에 편중되지 않음으로서 과도한 인권침해를 막고 정의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법의 지배하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내지는 기능에 있어 공형벌권의 본질은 국가가 범죄 상황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대리인 혹은 양대립 당사자의 중재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사적(私的) 이익을 배제하고 '국가 대 범죄인'의 관계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판정을 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할

자의 처벌권의 행사는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자와 동등한 지위(ebenbürtige Position)로부터 멀어져간 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형사사법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었으며, 이것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이며, 범죄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은 범공동체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²⁰⁾

형사절차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형사정책도 또한 주로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우와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은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피해자는 증인으로서의 역할밖에 기대할 수 없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²¹⁾

4. 범죄피해자 지위의 부활기

범죄피해자의 지위가 쇠퇴한 시기에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벤담(Jeremy Bentham)과 페리(E. Ferri)·가로팔로(Garofalo)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벤담은 형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반예방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형벌제도의 확립과 함께 피해자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 이념은 현재의 피해자 보상의 기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페리·가로팔로도 범죄피해자는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죄피해자는 구금생활 중의 가해자가 종사한 작업으로부터의 수입의 일부를 받도록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 하에서 피해자는 주변인(Randfigur)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용식,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 5면).

20) 류전철, 앞의 논문, 57면.

21)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0-21면.

다고 주장하였다.²²⁾

1960년 전후부터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비판하는 주장이 높아졌는데, 그 계기는 영국의 프라이(M. Fry)에 의한 피해보상제도의 제창이었다. 프라이는 1957년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논문을 통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에의 경제적 보상의 제도화만이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진정시키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형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었다.²³⁾ 이러한 주장에 의하여 1959년에 범죄피해자보상법안이 제출되었다.²⁴⁾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영국의 논의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²⁵⁾

1985년에 제7회 국제연합범죄방지회의(범죄의 방지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범죄의 피해자와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국제연합피해자인권선언)”이 채택되어, 피해자가 그 존엄에 대하여 동정과 경의를 가지고 처우 받아야 될 것,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질적·의료적·심리학적·사회적 원조를 받도록 하며,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 등이 선언되었다.²⁶⁾

22) 藤本哲也, 「刑事政策概論」, 青林書院, 1998, 57면.

23) M. Fry, "Justice for victims", The Observer, London, 1957. 8면(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1-22면 각주 5) 재인용).

24) 영국 내무부는 1959년의 ‘범죄백서-변모하는 사회의 형사정책-’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의 의무화를 지지하였다. 1961년에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1962년에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64년 3월에 내무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2면).

25) 뉴질랜드에서는 영국보다 먼저 1963년부터 범죄피해자보상법을 시행하여 일정한 범죄에 의해 부상을 입은 자 및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66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1967년에는 호주에서도 피해자보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었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22면).

26) 이와 병행하여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에 있어서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의 확립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23면).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형사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형사절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수사와 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공판절차를 거쳐 재판단계로 종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중요한 헌법적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이다. 즉 수사 받고, 공판 받는 피의자·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범죄자의 유죄확정이전에 실제적인 범죄피해자는 존재한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²⁷⁾ 하지만 범죄는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의 법익침해를 유발한 것이며, 그러한 범죄와 관련된 과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것이었으며, 비록 국가가 피해자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대신 한 후부터 정형화된 형사절차에서도 본질은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다툼의 종국은 실제진실발견이겠지만, 종국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정절차의 준수도 중요한 규칙(rule)이며, 이 규칙을 공정하게 유지할 부담을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피해자가 잠정적인 범죄자와 함께 다툼의 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²⁸⁾

제3절 범죄피해자의 유형

1. 의의

27) 범치국가적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 볼 때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범죄피해자를 설정하고 그에게 형사절차상 일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결국 혐의에 불과한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실제적인, 더 나아가 보호가 필요하고, 지위가 인정되고 권리가 부여되는 범죄피해자의 설정은 자칫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류전철, 앞의 논문, 53-54면).

28) 류전철, 위의 논문, 54면.

범죄피해자의 유형은 범죄피해자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에 대한 구분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유형이 갖는 의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피해를 입는 상황과 여건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유형의 전제가 된다.

2. 헨티히의 범죄피해자유형

헨티히(Hans von Hentig)는 미국에 망명한 독일인 범죄학자이며 피해자학연구의 선구자이다. 그는 ‘범죄자와 그의 피해자’(The Criminal and His Victim, 1948)²⁹⁾에서 범죄이중주(The Duet Frame of Crime)란 가설을 제창했다. 이 책에서 헨티히는 범죄자를 행위자(doer)와 수인자(suffer)의 상호관계로 파악했다.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예컨대, 먼저 공격적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행위도발자’로 묘사하였다.³⁰⁾ 범죄피해자의 사정을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한 원인으로 이해한 후 피해자학은 주로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유형에 연구를 집중하였다.³¹⁾

헨티히는 가해자 및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수단, 피해의 정도, 그 사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 된다면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의의가 있는 전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복잡한 정신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상호작용, 반발하거나 끌어당기는 미묘한 메커니즘,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가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

29) 피해자학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단계를 끌어올린 것은 Hans von Hentig로 그의 저서인 ‘범죄자와 그 피해자’에서라고 할 수 있다. ... 피해자학을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과학으로서 한정하는 개념이며 ... (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27면).

30)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50면.

31)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치안연구소, 2002, 6면.

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³²⁾

헨티히는 범죄피해자를 ① 일반적 범죄피해자, ② 심리학적 범죄피해자, ③ 저항하는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였다.³³⁾

‘일반적 범죄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행동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범죄피해자(연소자, 여성, 노인, 정신박약자 또는 정신장애자, 이민자, 소수민족, 평균능력 이하인 자(둔감한 자, 알콜중독자) 등)를 말하고, ‘심리학적 범죄피해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되기 쉬운 범죄피해자(무기력한 자, 의기소침한 자, 탐욕자, 품행이 방정치 못한 자, 호색가, 고립되어 외로운 자, 실연자, 독선적인 자,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자, 궁박한 상황에 있는 자 등)을 말하며, ‘저항하는 범죄피해자’는 ‘활동적인 범죄피해자’라고도 하며 스스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범죄피해자(원래 자신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생각되는 사회제도 등에 반항함으로 인해 스스로 범죄를 자초하여 범죄자가 되는 경우로서 결국 2차, 3차 피해현상의 역작용을 범죄라는 형태로 극복하는 범죄피해자)를 의미한다.

3. 미야자와의 범죄피해자유형³⁴⁾

미야자와 고이치(宮澤浩一)는 ① 평균적(전형적) 범죄피해자, ② 동정받는 범죄피해자와 동정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③ 투쟁하는 범죄피해자와 침묵하는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였다.

32)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7-28면

33) 헨티히는 피해자의 문제를 범죄학의 하나의 측면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존재가 범죄학을 만든다’ 라고 하는 기본적 태도를 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헨티히가 그의 저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설로는 ① 범죄자가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②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타입이 있는 것, ③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27면).

34)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51면.

‘평균적(전형적) 범죄피해자’는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범죄피해자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피해자를 말하고, ‘동정 받는 범죄피해자’는 우발적 범죄에 의한 범죄피해자나 범죄의 희생자를 말하고 탐욕이나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원인을 제공한 범죄피해자, 스스로 범죄를 유발한 범죄피해자, 무기력과 경솔함 등으로 피해를 야기한 범죄피해자는 ‘동정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이다. 범죄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자나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받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범죄피해자를 ‘투쟁하는 범죄피해자’라 하고, 범죄에 직면하여 저항을 포기하고 범죄자의 공격을 받아들이거나, 피해를 당한 후에도 자신의 신용이나 명예를 위해 또는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더 이상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않거나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범죄피해자를 ‘침묵하는 범죄피해자’라 한다.

4. 엘렌베르거의 범죄피해자유형³⁵⁾

엘렌베르거(Henri Ellenberger)는 정신병학과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헤티히의 주장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성을 밝히려고 하였다.³⁶⁾

엘렌베르거는 범죄피해자를 ① 일반적(현실적) 범죄피해자, ② 잠재적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였다.

‘일반적(현실적)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이며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말하고, ‘잠재적 범죄피해자’는 실제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영속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범죄자들이 목표를 삼을만한 특성(자기혐오 경향, 우울증 및 아벨증후군³⁷⁾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35)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51-52면.

36) 김용세, 앞의 책, 6면.

언젠가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5. 멘델존의 범죄피해자유형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변호사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은 생물학·심리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피해자학이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범인성복합체를 해명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의 발견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⁸⁾

그는 1956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피해발생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유책성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유형을 구분하였다.³⁹⁾ 그는 ‘피해자학-생물·심리·사회학적인 과학의 새로운 일 부문-’이라는 논문⁴⁰⁾을 발표하여 피해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래 피해자학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⁴¹⁾

멘델존은 범죄피해자를 ① 전혀 잘못이 없는 범죄피해자, ② 책임이 매우 적거나 조금 인정되는 범죄피해자, ③ 가해자와 똑 같은 정도의 책

37) 아벨증후군(syndrom d' Abel)이란 스스로 자신이 남들보다 행복하다고 믿고, 따라서 자신은 늘 모든 사람의 질투를 받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린 나머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방어하지 못한다(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52면).

38) 김용세, 앞의 책, 7면.

39)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52-53면.

40) 멘델존은 피해자학은 범죄학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과학이며,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문과학의 지식을 동원하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피해자학-생물·심리·사회학적인 과학의 새로운 일 부문-’이라는 논문에서 “근대사회는 범죄학을 확립하고 범죄퇴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고 그 기준으로서 범죄자의 인격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연구하는 특수한 과학은 없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상한 것으로 과학과 재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판의 공평,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도 피해자가 범죄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죄의 문제가 피해자의 면에서도 예방적, 치료적, 혹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과학만이 우리가 피해자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방위의 정책을 의도하고 사회의 성원을 교육시키며 치료함에 따라 그들을 피해와 그 반복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고 하였다(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29면).

41) 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26면.

임이 있는 범죄피해자, ④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범죄피해자, ⑤ 책임이 아주 많은 범죄피해자, ⑥ 기만적 또는 상상적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였다.

‘이상적이 피해자’라고도 하는 ‘전혀 잘못이 없는 범죄피해자’는 영아 살해의 범죄대상인 영아나 약취유인의 피해대상인 유아와 같이 아무런 자각이 없이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를 말하고, ‘책임이 매우 적거나 조금 인정되는 범죄피해자’는 무지로 낙태를 감행하다가 사망하는 임신부 등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가해자와 똑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범죄피해자’는 동반자살자, 자발적인 범죄피해자, 살인을 촉탁·승낙한 범죄피해자, 성매매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를 말하며,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범죄피해자’란 화를 돋우어 범죄를 촉발한 범죄피해자와 같은 경우로서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주벽 때문에 자식을 죽인 부모와 같은 사례)이다.

‘책임이 아주 많은 범죄피해자’는 공격적 범죄피해자, 정당방위의 상대방인 범죄피해자(침입절도를 시도하다 집주인의 총에 맞은 자 등)이고, ‘기만적 또는 상상적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를 가장하고 타인을 무고한 범죄피해자, 피해망상자·히스테릭발작자·병적 거짓말쟁이 등을 말한다.

6. 샤퍼의 범죄피해자유형⁴²⁾

샤퍼(Stephen Schafer)는 피해자와 그의 범죄자(The Victim and His Criminal : A Study in Functional Responsibility, 1968)란 저서에서 피해자의 유책성을 ‘기능적 책임’(functional responsibility)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고, 특정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는 책임에 기초한 유형론을

42)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53-54면.

제시하였다.

샤퍼는 범죄피해자의 유형을 ① 무관련 범죄피해자, ② 범죄유발 범죄피해자, ③ 범죄유인 범죄피해자, ④ 생물학적으로 빈약한 범죄피해자, ⑤ 사회적으로 약자인 범죄피해자, ⑥ 자의적 범죄피해자, ⑦ 정치적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였다.

‘무관련 범죄피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범죄피해자(재수 없게 가해자의 표적이 된 범죄피해자)를 말하고, ‘범죄유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의 행위(범죄의 도발, 가해자와 책임의 공유 등)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를 말하며, ‘범죄유인 범죄피해자’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발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유혹 또는 구실을 준 경우(스스로 위험한 장소나 시간에 노출시키거나 부적절한 복장 또는 나쁜 언사를 하는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빈약한 범죄피해자’는 허약한 경우(어린이, 노인, 신체·정신장애자 등)에 범죄의 대상이 된 범죄피해자이며, ‘사회적으로 약자인 범죄피해자’는 피해자가 소수민족이거나 특정 종교의 신봉자 등인 경우에 입는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자의적 범죄피해자’는 ‘도의적 범죄피해자’·‘자학적 범죄피해자’·‘범죄학적 범죄피해자’라고도 하며, 스스로 범죄피해를 초래(마약중독자, 성매매를 한 자, 동성애자, 도박꾼 등)한 피해자이다. 자의적 범죄피해자는 스스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 범죄피해자이므로 ‘피해자 없는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이다. ‘정치적 범죄피해자’는 정치권력자에 반대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이다.

7. 기타 범죄피해자유형

범죄피해자유형을 구분한 견해로 셀린과 볼프강(Sellin & Wolfgang)

의 범죄피해자유형과 셸린의 범죄피해자유형이 있다.

셸린과 볼프강은 ① 1차적 범죄피해자와 2차적 범죄피해자, ② 제3의 범죄피해자, 상호적 범죄피해자, 무피해자로 구분하였다. 특히 볼프강은 경찰통계를 조사하여 필라델피아 시에서 1948년부터 1952년 사이에 발생한 588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150건(26%)이 피해자 유발사례(언쟁 중 피해자가 먼저 무기를 보임으로써 살인을 유발함)였다고 밝혔다.⁴³⁾

셸린은 ① 능동적 범죄자와 수동적 범죄피해자, ② 능동적 범죄자와 반능동적 범죄피해자, ③ 능동적 범죄자와 능동적 범죄피해자, ④ 반수동적 범죄자와 능동적 범죄피해자, ⑤ 수동적 범죄자와 능동적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였다.⁴⁴⁾

제4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책무

1. 국가의 책무

왜 국가 등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할 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첫째, 형사사법의 독점으로부터 오는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형사사법의 운영으로부터 시민을 제외시킴으로써 범죄적 위반으로부터 그 시민들을 보호할 총체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형법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시민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자기 보호행위 즉, 자기 방어(self-defence)나 심적 미약 상태(state of distress) 등의 경우를 제외

43)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54면.

44)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55면.

하고서는 시민들 스스로 자구책(self help)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⁴⁵⁾ 둘째, 가해자가 피해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서 오는 국가의 책임이다. 벌금과 자유형이라는 수단을 통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흔히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 청구의 실현을 방해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가의 이해관계는 피해자 청구의 불이익에 우선해서 행사됨으로써 국가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⁴⁶⁾ 셋째,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오는 국가의 책임이다. 넷째, 사회적 연대성의 측면에서 오는 국가의 책임이다. 다섯째, 국가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데서 오는 책임이다.⁴⁷⁾

이러한 국가 등의 책임 또는 책무의 핵심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범죄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단순히 일반 개인 간의 갈등과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관점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우리의 법률도 명문화하여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7731호, 2005.12.23, 제정)은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의 책무

45) 따라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혹은 내적인 평화(inner peace)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의 과실을 주장함이 없이 범죄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일종의 보장책임(guarantee liability)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Hans-Heiner Kühne/최인섭 역, “유럽에서의 범죄피해자 공공보상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호, 1993, 21면).

46) Hans-Heiner Kühne/최인섭 역, 위의 논문, 23-24면.

47) Hans-Heiner Kühne/최인섭 역, 위의 논문, 24-26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②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제4조)가 있으며, 이러한 책무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내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제15조), 실무위원회⁴⁸⁾를 구성·운영하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여성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10인 이내의 민간위원(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등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관계 부처 실·국장,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시행령 제7조 제4항)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법무부는 5개년간의 범죄피해자기본계획(제12조)을, 각 행정부처 및 특별시·광역시·도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시행령 제4조).⁴⁹⁾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제5조), 특별시·광역시·도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계획수립을 위해 각 지역 범죄피

4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9) 오경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10면.

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⁵⁰⁾

4. 국민의 책무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제6조) 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범죄피해자를 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⁵¹⁾

50) 오경식, 위의 논문, 10면.

51) 오경식, 위의 논문, 10-11면.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제1절 의의

북미와 유럽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처음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1950년대에 민간의 자원봉사단체가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부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뉴질랜드⁵²⁾와 영국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⁵³⁾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생명·신체의 피해에 대한 일부보상에 그치는 정도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유럽에서 범죄피해자운동이 본격화하였고,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협회, 독일의 백색고리나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협회 등이 체계화된 범죄피해자지원조직으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UN과 유럽평의회가 각종 국제회의와 정부간 협의를 거쳐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각국의 실정법과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⁵⁴⁾

52)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9세기말 범죄실증학파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1964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상법이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63면).

53) 이형국·박영규·오영근·이영근·이훈동·장규원·조균석·윤옥경·이수정·허경미, 「범죄피해자학의 이론과 실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2005, 114면.

54) 송명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9면.

제2절 영국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영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입법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였으나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다.⁵⁵⁾ 1950년대부터는 산발적이지만 민간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이 개시되었다.⁵⁶⁾ 그러나 본격적인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전개된 것은 1964년 범죄피해자보상제도⁵⁷⁾(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가 실시된 후이다.

1970년대에는 민간자원봉사단체에 의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그리고 형사사법 실무상의 조언 등 실제적 측면의 지원이 본격화하였다.⁵⁸⁾ 1972년 주민들에 대한 주거침입절도 피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범죄피해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⁵⁹⁾ 1973년에는 전국피해자협회(National Victims Association : NVA)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에서 형사화해와 손해배상, 법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피해자의 욕구 조사 등 피해자보호를 향한 논의가 전개되었다.⁶⁰⁾

1988년에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1985년 사법의 기본원칙선언’⁶¹⁾ 및 ‘1987년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⁶²⁾에 부응하였다. 경찰과

55)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71면.

56) 영국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기초를 세운 치안관사이자 형벌개량운동가인 프라이(Margery Fry)는 피의자 및 수형자의 인권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114면).

57) 이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실정법에 의해 보장된 것은 1988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1988)에 의해서였다(김재민, 위의 책, 116면).

58) 김용세, 앞의 책, 58면.

59) 김재민, 앞의 책, 114면.

60) 김재민, 위의 책, 114면.

61)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Abuse of Power :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62)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R(87) 21 of the Committee*

검찰의 사건처리 과정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범죄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⁶³⁾

1990년 2월에는 형사사법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선언한 피해자헌장(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Standards for Victims of Crime)을 공포하였다.⁶⁴⁾ 이 헌장은 범죄피해자의 권리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간의 피해자 치우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영국의 피해자대책을 한층 체계화 시킨 것이었다.⁶⁵⁾

그 후 영국은 1995년에 이르러서 ‘범죄피해보상법’(Crime Injuries Compensation Act)과 ‘범죄피해보상기준’(Crime Injuries Compensation Scheme)을 마련하였다. 1996년에는 피해자헌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신 피해자헌장’이 발표되었다.⁶⁶⁾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영국의 ‘범죄피해보상법’과 ‘범죄피해보상기준’은 생명·신체의 피해, 의학상 정신·심리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상처나 의학상 병적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 등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적 피해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신체적 피해로부터 야기된 것이어야 하지만, 성범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Assistance to Victims and Prevention of Victimization, adopted on 17 Sep. 1987.

63) 김용세, 앞의 책, 60면.

64) 김용세, 위의 책, 60면.

65) 김재민, 앞의 책, 116면.

66) Home Office,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Standards for Victims of Crime*, 1996(김재민, 위의 책, 116면).

죄에서의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가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인정하였다.⁶⁷⁾

범죄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① 방화 또는 독극물범죄로 인한 피해, ② 철도불법침입범죄로 인한 피해, ③ 범죄자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범죄발생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그러한 행위를 수행 중인 사법관리를 돕다가 발생한 피해 등이다. 보상액은 피해의 등급과 각 등급에서의 비율에 따라 25단계로 나누고 1천 파운드(약 200만 원)에서 25만 파운드(약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⁶⁸⁾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1960년대부터 영국의 범죄피해자지원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활성화되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단체는 범죄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 VS)이다.

VS는 1973년 브리스톨(Bristol)에서 결성되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⁶⁹⁾ VS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1978년 30개의 작의 협의체가 형성되었고,⁷⁰⁾ 1979년에는 전국적인 범죄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VS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인 지원조직으로서, 범죄의 발생일자나 경찰에 대한 신고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⁷¹⁾ VS는 경찰의

67)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2면.

68)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2면; 김재민, 앞의 책, 116면.

69) 본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서 결성과정에서 경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김재민, 앞의 책, 115면)

70) 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14면.

71) 2003년 말 현재 15,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3%가 자원봉사자들이다(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73면).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상담이나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조언을 행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범죄피해자의 필요(needs)⁷²⁾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소개하기도 한다.⁷³⁾ 2008년 7월 런던 VS가 77개의 VS와 협약을 맺어 조직을 이루고 있다.⁷⁴⁾

1982년부터 전국규모의 범죄실태조사(British Crime Survey : BCS)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범죄피해 실태와 피해자 수요(needs)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었다. 특히 ‘제2차 피해자화’실태가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전환에 기여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세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연간 범죄피해실태(범죄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를 면접조사 하였는데 1992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⁷⁵⁾ 이 조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는 경우와 사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불만이 있음이 밝혀졌다.

1989년부터는 증인보호(Witness Service : WS)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WS는 잉글랜드·웨일즈의 모든 형사법원(Crown Court)과 약 절반 정도의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s)에 설치되어 있다. WS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증인·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형사절차의 진행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에 의한 사건직후의 위기 개입, 카운슬링, 방법상의 조언,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의 소개, 형사사법 제도나 사건처리현황에 관한 정보제공, 법정에서의 보좌 등을 행하고 있다.⁷⁶⁾

72)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피해자지원을 보아왔기 때문에 ... 피해자의 요구(need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광민 위의 논문, 14면).

73) 김용세, 앞의 책, 59면.

74) 박광민, 앞의 논문, 14면.

75) 김용세, 앞의 책, 59면.

76)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73면.

VS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주로 국고로부터의 지원에 의하고, 부분적으로 행사수입, 후원회원의 기부, 신탁 및 기금, 로터리클럽의 지원 및 크리스마스카드와 상품판매 대금으로 이루어진다.

내무성은 매년 사무국, VS와 WS의 지방조직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전화 등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⁷⁷⁾ 보조금은 활동계획을 매년 내무성에 신고하여 보조금액에 대한 교섭과 계약의 체결을 통해, 그 계약에 근거해 지급된다. VS의 예산집행은 활동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무성은 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⁷⁸⁾ VS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가지고 내무부나 경찰 등의 정부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선단체이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VS와 정부기관의 연계는 피해자의 자동위탁이라는 제도에 잘 나타나는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VS에 위임하고 모든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VS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관할 VS에 위탁한다. 다만 살인, 교통사고사,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VS에 위임할 수 없다.⁷⁹⁾

전국의 VS 등은 전국피해자보호단체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 Support Schemes : NAVSS, 1979)에 소속되어 있다. NAVSS는 VS와 WS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조직이다. NAVSS는 범죄피해자 및 중증인 일반을 지원 또는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본부는 런던에 있는 피해자보호사무국(Victim Support National Office : VSNO)이다. VSNO는 NAVSS가 VS 및 WS에 제공하는 교육훈련·정보제공 또는 정책 및 실무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기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에

77) VS의 2003년도의 재정수입은 총 3천 5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그 중 내무성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이 2천 923만 파운드로 약 97% 정도에 달하고 있다(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4면).

78)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4면.

79) 박광민, 앞의 논문, 14-15면.

관한 사회운동과 입법운동을 주도하고,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언론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⁸⁰⁾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영국 경찰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제는 지속적이며 공고하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보살피고,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여, 범죄피해자와 함께 느끼고, 범죄피해자를 이해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고립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이나 형사절차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경감시키고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¹⁾

이에 따라 경찰에 요구되는 많은 업무량을 충족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민간부문의 지원단체가 필요함에 따라 민간·경찰·(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는 공동체적 대응기구인 NAVSS가 만들어졌다.

NAVSS의 목표는 ① 각 범죄피해자, 목격자, 그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지원, ② 범죄피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제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증진 등이다.⁸²⁾ 일정직위 이상의 경찰간부가 지역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NAVSS는 경찰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기관·단체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충격에 빠진 범죄피해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NAVSS의 운영방침은 ① 서비스의 무료제공과 비밀의 보장한다. ② 범죄피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범죄

80)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4면.

81)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5면.

82)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5-326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 ③ 지원과정에서 인종, 나이, 성별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④ 타 기관과(경찰, 내무부, 보호관찰소, 검찰 등)과 협력한다. ⑤ 가해자의 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시는 금지된다. 범죄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되는 보상이나 보호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가해자의 처벌이나 형의 선고 등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다. ⑥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동지침에 따라 운영한다.⁸³⁾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사건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관을 사건현장에 보낸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와 향후 사건을 담당할 부서 등을 알려 준다. 그리고 최소한 5일 이내에 ‘사건의 피해자’라는 소책자를 주는데 여기에는 수사기간 중이나 가해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가해자를 가려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중요한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마다 통보한다. 절도, 폭행, 강도, 방화, 재물손괴 등에 대해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에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내용을 피해자지원협의체에 통보한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살인 등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NAVSS에 통보한다. 범죄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⁸⁴⁾

NAVSS는 사건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에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주선한다. 범죄피해자를 방문한 자원봉사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아픈 기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하며 보험금 청구, 형사피해보상청구, 특정문제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의 안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게 된다. 범죄로 인하여 가족의 일원이

83)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5-326면; 김재민, 앞의 책, 115면.

84)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6면.

사망한 경우나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중범죄를 목격한 어린이의 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경찰은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관을 배치한다.⁸⁵⁾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며, 범죄피해자의 설명을 경청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된다. 경찰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 피해나 손실, 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경찰, 검찰, 판사 등은 사건관련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이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고려하게 된다.⁸⁶⁾ 범죄피해자가 목격자로 법정에서 출석하게 되는 경우 NAVSS에 의해 부수적으로 운영되는 목격자지원협의체(Witness Service)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된다. 숙련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재판의 전후나 진행 중에 목격자와 그 가족, 친지들을 돕게 된다. 목격자가 원하는 경우 재판 시작 전에 법정을 둘러 볼 수도 있으며, 동반한 친지나 친구를 위한 좌석예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강력범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범죄피해보상제도에 의거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⁸⁷⁾

제3절 미국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미국에서 식민지시대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회복은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유급으로 치안업무에 종사한 보안관(public officials)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자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인수사 및 체포, 혐의 자료의 제출, 범인소추에 드는 제반비용을 부담할 책

85) 김재민, 앞의 책, 120면.

86)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326면.

87) '강력범죄피해자-형사피해보상제도 안내' 라는 책자에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안내되어진다(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6-327면).

임이 있었다. 그 후 형사절차에서 사적 보복이 금지되면서 개인에 의한 수사 및 소추활동이 공중소추(public prosecution)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정부의 공식적 기소절차에 협조하는 증인이나 목격자로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⁸⁸⁾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십 여개 이상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의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⁸⁹⁾

1960년대 미국에서는 폭력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 해결과제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⁹⁰⁾ 미국은 1965년에 ‘범죄피해자보상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⁹¹⁾ 그 후 뉴욕, 하와이, 매사추세츠 주로 이어졌다.⁹²⁾

1970년대에는 관민의 피해자지원조직에 의한 긴급시의 서비스 등 각종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직접적 지원은 3곳의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그 후 전미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3곳의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Aid for Victims of Crime,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주), 강간에 대항하는 만안지역여성(Bay Area Women Against Rape, 샌프란시스코)

88) 김재민, 앞의 책, 121면.

89) 이형국 외 9인, 앞의 책, 114면.

90) 김용세, 앞의 책, 61면;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35면.

91) William G. Doener. Steven P. Lab. *Victimology*, Second Edition, 1998, 83면; 당시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Edmund Pat Brown은 “예컨대, 강도 행위 시 한 가족의 부양자를 살해한 자는 교도소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 피난처, 의료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족은 궁핍에 빠지게 된다. 공공부조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는 것이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고 역설하였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35면).

92) 이형국 외 9인, 앞의 책, 114면.

코, 캘리포니아 주),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 워싱턴 D.C) 등이다.⁹³⁾

미국에서 피해자지원에 관한 발전의 계기는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1981년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National Crime Victims' Rights Week)을 설정한 이후부터이다. 이 후 1982년 9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에 관한 대통령 특별위원회’(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가 구성되어 피해자관련 문헌들을 연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보호 담당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한 최종보고서의 간행하였다.⁹⁴⁾

이 보고서는 크게 나누어 정부에 대한 권고와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연방헌법수정의 제안으로 나뉜다.

정부에 대한 권고는 ① 연방 및 주 단계에 있어서 행정적, 입법적인 조치를 구하는 권고, ② 연방에 대한 권고, ③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권고(경찰, 검찰, 법원 및 가석방위원회에 대한 권고), ④ 그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한 권고(병원, 목사(성직자), 법조계, 학교, 정신의료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권고)로 나누어진다. 정부에 대한 권고는 다시 68항목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각 권고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권고사항의 경위, 목적, 다른 권고사항과의 관계, 관련법률, 판례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미국에 있어서 그 후에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및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각종의 입법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의 기본이 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⁹⁵⁾

연방헌법수정의 제안에는 연방헌법수정 제6조에 대하여 피고인과 마

93)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35-36면.

94) 김재민, 앞의 책, 122면.

95)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37면 각주 24).

찬가지고 피해자는 모든 형사소추에 관하여 사법절차의 중요한 모든 단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⁹⁶⁾

미국연방정부의 이러한 권고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부에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를 설치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한 입법적인 노력으로는 1982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Law)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역할증대 및 보호를 천명하였고,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피해자 및 증인을 원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경과(피의자의 체포·법관에의 출두·보석·기소사항 등)을 고지해주어야 한다는 규정, 형사절차 진행과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을 토대로 1983년 ‘피해자 및 증인원조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지침’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⁹⁷⁾

이 보고서가 간행된 1982년까지 36개 주가 피해자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⁹⁸⁾ 1984년에는 연방의 ‘범죄피해자법’(Victim of Crime Act : VOCA)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한 범죄피해자기금(the Crime Victims Fund)이 창설되었다.⁹⁹⁾ 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연방법

96) Peggy M.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Carolina Academic Press, 2001, 9면(박광민a, 앞의 논문, 각주 22) 재인용); 그 후 1997년에는 보고서 발표 15주년을 기념하여 보고서에 게재된 권고사항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새롭게 250항목이 넘는 권고를 하는 ‘실무에서의 새로운 방향성: 21세기를 향한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New Directions from the Field: Victim Rights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가 완성되었다(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37면 각주 24).

97)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2002, 58-59면;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1998, 158면; 김재민, 위의 책, 122-123면.

98)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Final report, December 1982, 39면.

99) 장규원,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3,

위반범죄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 벌금, 추징금, 몰수 등이다.¹⁰⁰⁾ 이 기금으로부터 각주의 피해자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¹⁰¹⁾ 그러나 피해자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보상청구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나타났다.¹⁰²⁾

1986년에는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및 지원법’(Children's Justice and Assistance)이 제정되었고¹⁰³⁾, 1996년에는 연방의 ‘반테러리즘과 효과적 사형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이 제정되어 외국에서의 테러에 의한 피해자도 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로부터 보상이 가능해졌다.¹⁰⁴⁾

그리고 2000년에는 ‘교통사고 및 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980년대 초부터 약 20년 동안 미국의 각주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공판정에 출석할 권리, 가해자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피해회복을 요구할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¹⁰⁵⁾ 이제는 미국의 모든 주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

9면.

100)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37면 각주 25).

101) 김용세, 위의 책, 62-63면; 이형국 외, 앞의 책, 114면

102) 박광민a, 앞의 논문, 162면.

103) 김재민, 앞의 책, 123면.

104)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63면; 장규원, 앞의 논문, 9면.

105) 손해배상명령 또는 범죄피해자보상을 권리로써 인정하고 있고,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일부로써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Rhode Island 주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Article 1. Section 23 [Rights of Victims of Crime] A Victim of crime shall, as a matter of right, be

호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권리헌장(Victims' Bill of Right)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 말에는 31개 주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¹⁰⁶⁾

미국 연방법령이나 주 법령 중 약 27,000개 조항이 직간접으로 범죄 피해자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와 대다수의 주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의 중요사항을 통지해 주는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피해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¹⁰⁷⁾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미국의 피해자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주로 시민운동, 여성운동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일환이었다.¹⁰⁸⁾ 최근 교정, 보호관찰 및 가석방기관(Parole and Probation)이 원조하는 피해자 지원프로그램¹⁰⁹⁾도 증가하고 있다.¹¹⁰⁾

treated by agents of state with dignity, respect and sensitivity during all phas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Such person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from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financial compensation for any injury or loss caused by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and shall receive such other compensation as the state may provided. Before sentencing a victim shall have the right to address the court regarding the impact which the perpetrator's conduct has had upon the victims(장규원, 앞의 논문, 10면 재인용).

106)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오쓰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코르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몬태나 주 등이 있다(김용세, 앞의 책, 63-64면).

107) 김재민, 앞의 책, 123면.

108) 박광민a, 위의 논문, 16면.

109)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사건 직후 긴급시의 지원, 카운슬링, 범죄피해자보상, 피해배상 등 각종 청구의 지원, 대변, 증거의 반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법원에의 동행,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제공, 다른 각종의 지원단체의 소개 등이 포함된다(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74면).

110) 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74면.

미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는 전국적인 민간단체는 피해자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전국범죄피해자지원단체(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 NOVA) 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 NCVVC)이며, 이 두 단체가 피해자지원제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¹¹¹⁾

미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는 문화가 아니라 각 지역 단위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민간지원단체는 지역 사법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이루고 있다.¹¹²⁾

가. 전국범죄피해자지원단체(NOVA)

NOVA는 1974년에 36명의 피해자지원활동 관계자(피해자 및 증인보호 관련단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변호사 및 실제로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자)가 플로리다의 Fort Lauderdale에 모인 것을 계기로 설립된 단체이다.¹¹³⁾

NOVA의 발전에는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의한 자조적인 단체인 'Parents of Murdered Children'(POMC) 와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MADD)¹¹⁴⁾의 등장이 기여하였다. 또한 미국의 피해자지원의

111) 박광민a, 위의 논문, 16면.

112)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 실무에 있어서는 NCVVC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NOVA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직원들의 활동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일을 주 업무 중의 하나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NOVA 가입 단체들은 전문가와의 연계를 이루고 있다(박광민, 위의 논문, 16-17면)

113) NOVA의 활동목표는 ① 피해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피해자에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이 되는 것, ②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③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들의 교육을 보조하는 것, ④ 회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 등이다(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75면).

114) MADD는 뺑소니 운전의 위해 당시 13세의 딸을 잃은 모친(Dandy Lightner)에 의해 1980년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된 단체이다. ... 1980년에 설립된 지부는 2곳이었으나 그 후 1984년에는 지부가 350개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MADD의 목적은 ... 음주운전을 멈추게 하고 음주운전자에 의한 피해자를 지원하며,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MADD에서 보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는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송기오·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베트남전쟁 귀환병사에게 다발한 정신적 외상체험에 기인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과 치료법의 발전에 있다.¹¹⁵⁾

NOVA는 그 후에도 조직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옹호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법제도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¹¹⁶⁾

NOVA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공공정책(national advocacy)을 선고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자보호 및 권리증진에 관한 입법운동을 선도하고 행정 및 사법제도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방 및 각 주정부에 대해 피해자 권리장전의 제정 및 피해보상제도의 확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¹¹⁷⁾ 설립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출범하자마자 의지할 곳이 없는 수많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지원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¹¹⁸⁾은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강경래, 위의 책, 80면).

115) 이것이 베트남전쟁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는 게릴라전 및 새롭게 채용된 병사의 귀환제도인 DEROS system이 병사에게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연구과제에서 많은 범죄피해자도 강한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는 같은 증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것이 PTSD개념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피해자지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많은 정신과의사 및 심리임상전문가가 민간지원자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일반사회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확대되기 이르렀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75면).

116) 1980년에는 다른 관련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활발한 활동에 근거하여 1982년에 레이건 대통령에 의한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고 그 후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에는 피해자지원을 위해 약 4,500만 달러의 연방정부예산이 투입되었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76면).

117) 그 결과 1980년대에는 피해자의 권리(victim right)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연방을 포함한 모든 주에서 피해자 권리장전의 제정을 위한 가시적인 활동이 개시되었으며 그 중 32개 주에서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76면).

118) 지원내용은 면접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진단, 치료는 물론 다른 기관을 소개하거나 법정 출석을 보좌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 카운슬러, 변호사 또는 사회활동가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한다. 이와 같은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NOVA는 위기개입과 피해자원호(victim advocacy)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선발

NOV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policy-making body)는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형사사법, 의료 및 정신의료, 군, 교육, 종교계, 행정 등 각계 종사자와 피해자 지원운동가 중에서 선출되는 22명의 이사와 7명의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다.¹¹⁹⁾

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NCVC)

1985년에 설립된 NCVC의 목적과 역할은 NOVA에 비해서 범죄피해자와 밀접하고 더 직접적이다. 범죄피해자지원이 최우선 목적이었고 공공정책에서의 범죄피해자를 옹호하는 역할도 하며, 법률지원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범죄피해자지원관련 종사자에게 기술적 지원과 훈련을 하고 있다.¹²⁰⁾

이 같은 민간조직은 약 1만 여개에 이르고 있다.¹²¹⁾ 최근에는 종래 주로 범죄자 처우를 주목표로 활동하던 가석방 및 보호관찰기관을 비롯한 교정기관이 후원하는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피해자지원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피해자지원 기금이나 주정부의 보조를 받는다.¹²²⁾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하여 교육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77면).

119)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3회 열리는 회를 포함한 활동비를 모두 자비로 충당하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그 밖의 상근 유급직원은 9명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과 임시보조직원 등을 고용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급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의존한다(송기오·강경래, 위의 책, 78면).

120) 박광민a, 앞의 논문, 16면.

121)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64면; 김재민, 위의 책, 123면;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74면.

122) 김용세, 위의 책, 63면; 김재민, 위의 책, 124면.

미국은 1970년대 전반부터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구상하여 1974년에는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시 경찰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 경찰에 의해 경찰의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 발족되었고, 1975년에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시 경찰에도 피해자지원반과 아동학대대책실이 설치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¹²³⁾

1982년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통령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은 ① 범죄피해자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높이고 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 ② 검사의 승인 하에 신속히 채증활동을 마치고 범죄피해자 재산을 환부해 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③ 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이나 종결상황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주는 절차를 마련할 것, ④ 목격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으면 이를 수사의 최우선순위에 두어 수사를 하여야 하고, 이 내용을 검사에게 통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¹²⁴⁾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 OVC)에서 범죄피해자보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경찰 등 법집행 업무 종사자와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반폭력연대 네트워크’(Partnerships Against Violence Network)라는 가상도서관을 통해 FBI등 7개 연방기구에서 나온 폭력·가정폭력·약물 오남용 피해자 및 청소년 폭력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 NSA)와 전국 경찰지휘관 모임인 ‘전국경찰총수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IACP) 및 경

123) 김재민, 앞의 책, 126면.

124) 김재민, 위의 책, 122면.

찰간부연구포럼 등 경찰관련 주요 법집행기관들은 연방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고령자학대·위기개입 등 피해자 문제에 관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OVC도 IACP·NOVA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는 달리 경찰조직 내에 아동학대·노인학대·여성 성범죄관련 피해자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분야에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¹²⁵⁾

미국은 IACP산하에 ‘피해자지원위원회’(Victim Service Committee)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우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법집행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자지원훈련 프로그램개발’, ‘경찰 내 피해자지원 기능 창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개정필요 검토’, ‘대중과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권리신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피해자지원활동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한 협조를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엔젤레스 경찰국(LAPD)에서 운영하는 피해자지원(Victim Assistance)제도는 지방검사실에 설치된 ‘피해자와 목격자 지원 프로그램’과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검사실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지원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있어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지원 전담요원이 지방검사실, 각 경찰서 및 보안관 사무실 등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연결해 주고, 수사 및 법정절차에 동행하며 도와주고 증거로 쓰인 재산의 신속한 환부를 위해 노력한다.¹²⁶⁾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서도 LAPD는 처리절차를 엄격

125) 김재민, 앞의 책, 127면.

126)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8면.

한 규칙으로 정해 놓고 매뉴얼화하여 모든 경찰관이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는 ① 신고접수, ②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관계인 전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③ 가능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치료수단을 제공한다. ④ 검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긴급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함께 집을 쫓겨 집을 떠나도록 도와준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경죄혐의로 시의 검사에게, 중할 경우에는 중죄의 혐의로 지방검사에게 제출한다. 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범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를 한다. 사건이 입건되면, 검사, 경찰수사관 또는 피해지원담당자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설명해주고 추후 진행상황을 통보해 준다.¹²⁷⁾

5. 범죄피해자대책실의 활동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실**(th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 OVC)은 연방정부가 범죄피해자문제에 대하여 대처함에 있어서 항상 중심에 있었다. 1984년에 VOCA가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고, OVC는 범죄피해자기금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기금은 연방의 피해자지원제도의 기본적 재원이 된다. 이 재원은 일반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연방법에 위반한 자로부터 얻은 금전, 즉 벌금, 몰수된 보석보증금, 신설된 형벌부가금(penalty assesment) 등이 사용되고 있다.¹²⁸⁾ 재원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자가 부담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주의 일반 예산으로 부담하는 유형이

127)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8면.

128) OVC는 전국에서 다양한 정책이나 조성제도에 자금을 제공한다. 범죄피해자기금의 90-95%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각주에 지급되고 있다. 조성금의 지급이나 조성금이 소정의 목적에 사용되는가 여부의 확인은 OVC의 주 보상지원부(the State Compensation and Assistance Division)이 담당한다(警察政策研究センター, 「米國政府の被害者對策-司法省犯罪被害者室活動報告書から-」, 1999, 1면).

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80%는 첫 번째 유형이다. 즉 대부분의 주는 범죄피해자보상의 재원을 일반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⁹⁾ 범죄피해자보상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된다.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에 앞서 범죄피해보상이 시행된 경우는 후에 주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자금의 회수’(fund recover)라고 한다. 주는 검찰·법원과 협력하여 손해배상명령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낮다고 한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주의 경우 약 10%라고 한다.¹³⁰⁾

범죄피해자보상(the Crime Victim Compensation)제도란 살인 등의 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에 대하여 범죄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州)로부터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비용으로서는 의료비, 정신상담료, 일실임금, 장례비용 등이 있다. 일부의 주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치과치료비용 등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는 피해자가 입은 보상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연방범죄피해자부는 연방법원의 직원을 훈련하고 연방법원에서 사건이 취급된 피해자의 지원을 행한다. 동시에 행해지는 프로젝트는 긴급봉사(emergency service) 기금, 인디안(Native American) 보호구(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항구적인 네트워크 구축, 인디안 보호구에서 아동학대의 수사 및 소추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연방관계관(연방검찰관, 법집행관, 피해자-증인 보호관, 교정관 등)을 위한 훈련기술지원 등이다.¹³¹⁾

129) 가해자를 통해 범죄피해보상의 재원은 마련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예컨대 중죄(重罪)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50달러, 경죄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5달러라는 형벌부가금을 가해자가 범죄피해보상기금으로 지불하는 제도가 널리 채용되고 있다. 한편 벌금형의 경우 일정 비율의 추가금(surcharge on fines)의 지불을 요구하는 제도도 일반적이다. 또한 교도작업의 수익금을 범죄피해자보상기금에 편입시키는 주도 있다(장규원, 앞의 논문, 11면).

130) 장규원, 위의 논문, 11면.

131) 警察政策研究センター, 위의 책, 1-3면.

제4절 독일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관심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늦은 편이다. 1960년대까지는 범죄학 속에서 피해자학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나 피해자지원차원으로까지는 문제의식을 가지지는 못하였다.¹³²⁾ 16개주로 구성된 독일연방은 각 주의 경찰이 독자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¹³³⁾

독일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나 성폭력을 받은 여성의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그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 실시된 대규모 암수범죄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범죄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건지연에 따른 불쾌감, 범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 경미함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¹³⁴⁾

독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1976년 5월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OEG)의 제정에 의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¹³⁵⁾

132) 김재민, 앞의 책, 129면.

13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의 경우 주 내무부 산하 47개 경찰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경찰(Bundespolizei)의 경우 국경수비, 철도, 항공, 연방기구 지원 등의 업무로 특화되어 있어 피해자보호 관련 업무는 주 경찰의 각 경찰서가 담당한다. 주 내무부 소속 각급 경찰서 수사부서 내에 피해자보호 전담부서를 편제하고 있다. 예컨대 본(Bonn)경찰서의 경우 수사국(Direktion Kriminalität) 수사1과(Kriminalinspektion 1)에 범죄예방팀(Kommissariat Vorbeugung)이 조직되며, 범죄예방팀이 피해자보호(Opferschutz) 전담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독 경찰주재관 보고자료).

134) 김재민, 앞의 책, 129면.

135) 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실한 기회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을 열어 주는 등 …(김재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6년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개선
에 관한 제1차적 법률’(Ers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참가(Nebenklage), 부대소송(Adhasionsverfahren)의 개선
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할 적극적 권리가 부여되었고,
1994년에는 ‘범죄대책법’에 의해 피해회복과 가해자 피해자 화해제도가
성인 형법전에 편입되었다. 특히 1998년 ‘증인보호법’을 통한 형사소송
법의 개정으로 증인 및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감경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주별로 상이한 경찰법(Polizeigesetz)이 피해자보호 관련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NRW 경찰법은 제34조a를 통해 피해자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제163조 경찰의
임무를 통해 경찰의 범죄예방(Kriminalprävention) 임무를 규정하고 있
다. 범죄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 역시 경찰의 주요임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각급 경찰기관 내 편제는 주 내무부의 고유권한이다.¹³⁶⁾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가. 수사절차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검사는
피해자의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

위의 책, 130면).

136) 독일의 범죄피해자 관련법의 변천을 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Opferschutzgesetz, 1987),
‘증인보호법’(Zeugenschutzgesetz, 1998), ‘폭력예방법’(Gewaltschutzgesetz, 2002),
‘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echtsreformgesetz, 2004) 등이 있다(재독 주재경찰관 보
고자료).

며(제4조b), 검사는 신문 시 피해자를 각별한 동정과 배려로써 대해야한다(제9조a)고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피해자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공소제기절차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 피해자의 사인소추권인정

독일은 피해자의 사인소추권을 인정하여 고도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주거침입죄, 모욕죄, 상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소추를 할 수 있고, 개인이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사전 심사를 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판이 개시되면 피해자는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소송참가제도

독일에서는 피해자에게 공판절차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소송참가제도) 이를 부대공소제도(Nebenklage)라도 하는데 피해자나 그 유족 등이 검사와는 별개로 이에 필적하는 절차적 주체로서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참가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판결 후에도 상소 제기를 위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참가의 신청은 법원에서면으로 하고 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자격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참가 허가결정을 한다. 참가인은 증인신문시 공판정에 나갈 권리, 법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증거신청권, 진술권 등을 가지며 공판절차에서 소송참가인은 검사와 나란히 앉아 검사와 병행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¹³⁷⁾

137)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5-176면.

다. 공판절차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우선 증인신문의 내용을 제한하는데 독일 형사소송법 제68조의a 1항은 “증인 또는 … 증인의 근친자에서 불명예로 되거나 개인적 생활영역에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녹화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증인신문에 대체한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증인을 공판정에서 신문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녹화가 진실발견에 불가결한 경우는 사전에 녹화한 증인신문의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서 재생해 증거로 할 수가 있다. 다만 형사소추라는 목적과 진실규명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58조a). 독일은 피고인과의 대면 회피를 허용하고 있다. 즉,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16세 미만의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신문이 이뤄질 경우 증인의 안녕에 대한 중대한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공판정에 출석한 자의 면전에서 신문을 받으면 증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을 격리시키거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 외에서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a).¹³⁸⁾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수준의 피해자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마인츠에서 백색고리(WeiBer Ring)¹³⁹⁾ 피해자 지원

138)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7-177면.

139)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9면; (Weisser Ring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백색 고

단체가 결성되면서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피해자지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¹⁴⁰⁾ Weißer Ring는 최초의 전국적인 단체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활동을 해오는 동안 독일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조직화·체계화·네트워크화를 이루었다.¹⁴¹⁾

Weißer Ring은 피해회복 못지않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연방 및 주차원에서 정치·사법·행정 당국에 대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변하고 입법이나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범죄피해자 문제의 심각성과 범죄예방을 위한 계몽활동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Weißer Ring은 회원의 회비, 각종 기부금과 헌금, 유증 및 범칙금과 과징금으로부터의 할당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¹⁴²⁾

백색고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역, 병원 및 각급 체육시설 등 곳곳에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인 백색고리의 존재 및 도움 요청방법을 전단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보호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피해신고 시 경찰이 직접 원조하거

리' 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박광민교수는 이 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증시하여 '백색 연대' 라고 번역하고 있다. 박광민, 앞의 논문, 17면 각주26)); 독일의 피해자 원조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백색고리는 1976년 마인츠에서 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통일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색고리 발기인의 상당수는 경찰 관계자였으며 자원봉사자 대부분 또한 현역 또는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40) 독일의 민간 피해자보호 조직과 단체는 백색고리를 중심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원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의 소송절차 대처 지원, ② 다른 자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치료비용 지급, ③ 피해자와 동행하여 청문과 공판정에 출석, ④ 피해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기관을 소개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41) 박광민, 위의 논문, 17면.

142)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5면; 독일 백색고리의 재정은 회원 및 일반의 기부금과 유죄판결의 벌금으로 충당한다. 개인회원은 월 2.50 Euro, 부부회원은 월 3.75 Euro의 최소회비를 납부하며, 회비 및 기부금의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회원가입 시 피해자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피해자 정책소식지를 자동 배송하며 연방 및 주정부는 유죄판결 벌금액의 일부를 백색고리에 지원하고 있다(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나 민간단체를 중계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있다.¹⁴³⁾

2008년 현재 Weißer Ring의 회원 수는 독일 전역에서 6만 명이 넘으며 조직은 독일 전역에서 400개의 지부(피해자지원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사무적 총괄과 상호협력의 네트워크가 정비되어 있다.¹⁴⁴⁾

Weißer Ring의 주된 업무로는 ① 상담, 조언, 동반 서비스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원, ② 치료, 간호, 개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③ 의료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협동, ④ 형사사건화되어 피해자가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과 접촉하는 경우의 지도 및 동반 서비스, ⑤ 법적 절차, 신청절차 등에 관한 조언과 비용의 지원, ⑥ 변호사비용의 지원, ⑦ 의료비나 생활비용 등의 지원, ⑧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휴일프로그램의 제공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범죄피해자지원 외에 범죄방지를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홍보활동과 모금활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구, 범죄피해자를 배려한 법정책 등의 추진사업도 하고 있다.¹⁴⁵⁾

독일에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특정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많다. 예들 들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피난시설인 ‘여성의 집’은 전국에 400여 곳이 있어 피난장소의 제공이나 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여울목’(Wildwasser)이나 강간피해자를 위한 위기센터 ‘라라’(RaRa) 등이 300여 곳에 있다.¹⁴⁶⁾

‘베를린피해자지원협회’(Opferhilfe in Berlin e. V.)는 1986년 베를린 시내에서 형사시설교회사, 독지면접원, 보호사 등 형사사법관련 실무에

143) 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44) 박광민, 앞의 책, 17면.

145) 박광민, 위의 책, 17-18면.

146)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75면.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이 협회가 중심이 되어 1988년에 조직된 ado는 독일의 각 지역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하나이다. 그 목적은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범죄피해자의 동행서비스나 상담 혹은 경제적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범죄피해자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향상시키고, 상호교류나 의식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상호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⁴⁷⁾

또한 이러한 민간의 지원단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지원단체도 있다. 예를 들어 헤센 주의 'HILFE'는 주가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중의 하나이다.¹⁴⁸⁾

경찰기관 내에 별도의 임상심리사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피해자보호 네트워크 내에 소속된 병원의 임상심리사를 활용하고 있다. 공적기관 이외의 네트워크는 통상 민간단체로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심리치료사 등의 경우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각주 경찰교육기관에서는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과정을 개설하고 동 과정을 이수한 경찰관들을 범죄피해자 전담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NRW 경찰교육기관인 LAFP 역시 신입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동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¹⁴⁹⁾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경찰서 내 범죄예방팀 소속 피해자보호 전담인력은 2-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별 인력구조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경정이나 경감이 피해자보호업무를 전담한다.¹⁵⁰⁾ 경찰은 연방의 법무·여성·소년·가족·

147) 박광민, 앞의 논문, 18면.

148)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75면.

149) 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50) 통상 독일경찰 계급은 하위직(Mittlerer Dienst), 중간관리직(Gehobener Dienst), 고위직(Höherer Dienst) 3단계로 구분되나, NRW 주의 경우 최근 하위직을 없애고, 계급구조를 2단

교육·과학 및 보건부 등 피해자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보호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방법무부와의 협력 하에 ‘범죄피해자 안내서’(Opfer Fibel)를 발간한다. 범죄신고, 경찰과 검찰의 책무, 증인의 의무와 권리 및 피해보상 등 정보를 수록하였다. 피해의 대상자, 주제 등으로 기관 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나,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간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필요시 인력의 상호파견 및 교류를 부처를 초월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된다.¹⁵¹⁾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예외적이고 복합적인 피해자상황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경찰활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범죄나 교통사고, 다른 사건사고의 피해자를 접촉함에 있어서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목표가 된다.

경찰과의 현장에서의 피해자접촉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정 피해자로서 이해할 것, ② 범죄를 통하여 야기된 피해와 악영향을 방지 내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③ 사건처리 등 경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제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범행현장에서 우선 피해자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심과 감정이의를 통하여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신속히 판단하여 개개인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도움을 줄 것, ⑤ 상담을 통하여 다른 전문적인 피해자지원 전담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적절하게 안내하고 연계시켜 줄 것, ⑥ 이후의 경찰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개과정이나 제도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것, ⑦ 형사소송법이나 피해자보호법 등에 의한 사건

계화하고 있어 우리 경찰 계급과의 단순비교는 곤란하다(재독 경찰주재관 보고자료).
151) 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처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법률적 수단을 고지하고 피해자보상법 등 피해자지원 관련법규의 내용을 안내할 것, ⑧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보호개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 ⑨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회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¹⁵²⁾

이러한 목표달성의 토대로서 직장교육이나 안내책자 등을 통한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지원 문제에 대한 경찰관들의 민감성 제고, 피해자보호·지원수단과 가능성 등의 홍보, 피해자지원 전문단체와의 사전 접촉과 지역단위에서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상호협조체계의 구축, 신고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비치, 특히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의 연락방법 및 그 지원내용에 대한 대민 안내 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경찰은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지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로 보고, 피해자지원은 본질적으로 경찰이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도움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지원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에게 양도되어야 할 성질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지원 업무는 노동·사회·도시발전·문화체육부와 여성·청소년·보건·가정부가 주로 맡고 있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어서 피해자지원 업무는 사회보장과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전화를 새로 설치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 가능한 지원수단, 나아가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보상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지원을 하는 것은 범죄 또는 사고현장에서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위험상황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는 대개 경찰은 다른 피해지원 기관이

152)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9면.

나 민간단체들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¹⁵³⁾

각급 경찰서의 범죄피해자보호 전담팀(2-3명) 외에 소속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필요시 피해자 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별도의 예산배정은 없으며 일반 경찰예산으로 집행된다. 각주는 경찰법의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폭행방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내 거주 및 침입금지 등을 엄중 집행한다.¹⁵⁴⁾

각급 경찰기관은 주정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어 경찰예산은 각 주의 예산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피해자보호 부서의 예산 역시 주별로 상이한 경찰예산의 영향을 받으나, 타 부서수준의 예산이 배정된다.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보다는 관련 네트워크와의 유기적 협력 증진에 경찰 피해자 보호활동의 중점을 두는 분위기이다.¹⁵⁵⁾

연방내무부는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 경찰을 연계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¹⁵⁶⁾ 범죄피해자 구조기관 관련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¹⁵⁷⁾

경찰의 대책의 을 보면 1970년대 중반 이래 경찰활동 등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 특히 연방범죄수사청(BKA)은 1976년 피해자학 연구 분야를 설치, 다양한 피해자 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독일의 피해자보호정책에 기여하였다. BKA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회청문회에

153)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329-330면.

154) 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55) 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56) 예컨대 Bonn을 보면 성폭력상담과, 양성평등과, 세인트-마리엔 병원, 본 경찰서 범죄예방팀 등이 상호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여성의 집 및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단체가 설립되어 있다(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57) 연락처, 주소 및 담당자가 명기된 피해자원조 핸드북(Opferhilfehandbuch)의 배포 및 경찰서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출석 및 강연회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연방범죄수사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와의 전쟁(Opferschutz und die Kriminalittsbekmptung)’ 선포(1995) 하였다.¹⁵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Pro-Opfer’ 프로젝트¹⁵⁹⁾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의 전문성 향상, 주민신뢰도 강화로 피해자의 범죄신고를 촉진하고 종국적으로 경찰행정의 협력자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는 1999년 이래로 경찰서 내에 범죄 피해자 보호담당관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자구조 네트워크와의 연계 전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조력 및 구조기관 중계 등의 업무를

158) BKA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피해자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과연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 ② 범죄예방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으므로, 독일의 범죄예방 수준이 외국과 비교하여 타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경찰과 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 피해자로서의 증인 등의 보호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감수성을 가지고 대하며, 신뢰를 형성하여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건진행 과정에서는 물론, 사무실의 구조나 설비도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편안한 기분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⑤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후에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관하여 각 단계별 적정시점에 피해자가 관련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 ⑥ 심각한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 피해자지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가해자-피해자-화해절차를 밟더라도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를 물어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 의사에 반하여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59) 독일경찰의 Pro-Opfer 프로젝트

- ① 피해자보호를 위한 로고 및 표어 등 제작
- ② 피해자보상법을 관련 안내책자 제작
- ③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경찰서 구조변화 노력 계속
- ④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⑤ 경찰 대내외에 동 프로젝트 설명을 위한 강연 및 인터뷰 실시
- ⑥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추진
- ⑦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수행토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보호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조언 및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조력을 증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담당관과는 전화, 방문 또는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Bonn 경찰청의 경우 2명의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보호담당관으로 활동 중이다. NRW주는 쾰른(Köln)대학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인 Victim을 개발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직에 경찰이 조언 및 적극 관여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인 백색고리의 설립에 전·현직 경찰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 지향적 전문 조사/신문실(Vernehmungsraum) 및 ‘분리신문실’을 구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 동영상 및 음향 송수신 장치에 의한 신문실을 따로 마련하거나, 어린이 피해자 또는 증인을 위해 놀이방처럼 꾸며진 조사실을 설치하고 있다. 피해자/증인으로 하여금 피의자 식별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마주치지 않도록 투명창(Venezianische Spiegel, 일방에서만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유리)으로 구분된 분리신문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증인으로 특정되는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명(改名)과 같은 인적사항 변경까지를 경찰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범죄발생시 또는 범죄신고 접수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예측하여 확정하는 활동을 중시한다.¹⁶⁰⁾

제5절 일본

160) 재독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역사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1980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원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피해자급부법’이라 함)¹⁶¹⁾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¹⁶²⁾

1992년부터 1994년에 걸쳐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무종합연구소 등의 범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1995년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요강을 제정하고 경찰청과 지방청에 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는 한편 범죄수사규범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범죄피해자대책을 수립하였다.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여성경찰관을 배치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주는 범죄피해자연락제도를 실시하였다. 1995년의 지하철 사린가스사건을 계기로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경제적인 측면의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게 되었다.¹⁶³⁾

1996년에는 전국 민간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 포럼’을 창설하여 매년 전국 규모의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¹⁶⁴⁾

검찰은 1991년에 후쿠오카 지검(地檢)에서 시작된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1999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사건처리결과 또는 재판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 피해자보호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1997년 ‘범죄피해자 회복제도 검토협의회’를 발족시킨 후 1999년 5월 ‘범죄피해자기본법요강안’을 만들었고, 10월 최종안을 완성한 후 이 안을 기초로 1999년 말에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국

161)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162) 피해자급부법은 1974년 8명의 사망자와 380명의 중경사자가 발생한 미즈비시(三稜)중공업 빌딩 폭발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유족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79면).

163)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79-180면.

164) 김재민, 앞의 책, 140-141면.

회에 제출하였다. 2000년 5월 19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 함)¹⁶⁵⁾의 제정을 거쳐 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61호로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이하 ‘범죄피해기본법’이라 함)¹⁶⁶⁾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¹⁶⁷⁾

국가공안위원회고시 제25호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 제36호 제22조 제4항의 규정)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각의결정) 범죄수사규범 옴진리교범죄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¹⁶⁸⁾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성범죄의 고소기간의 철폐, 증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증인 부참인제도, 증인신문시 차폐조치, 비디오중계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및 녹화의 채택), 범죄피해자 등에 의한 심정이나 그 외의 의견진술권, 검찰 심사회의 심사신청권자의 범위확대, 범죄피해자의 우선방청권, 기록열람·등사권의 확대, 형사화해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¹⁶⁹⁾ 이 법률은 형사화해제도를 두고 있어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동법 제13조 제4항¹⁷⁰⁾).¹⁷¹⁾

165)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166) 犯罪被害者等基本法

167) 김재민, 앞의 책, 141면; 박광민, 앞의 논문, 19면.

168) 제일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69)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80면.

170)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立てに係る合意を公判調書に記載したときは、その記載は、裁判上の和解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범죄피해자급부법은 범죄피해자급부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를 범죄피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과실을 제외)에 의한 사망, 중상 또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 심신상실자 또는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포함시키고 있다. 급부금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부금, 범죄행위에 의해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중상질병급부금, 신체에 장애가 남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급부금 등 3종류가 있으며,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¹⁷²⁾

범죄피해급부제도는 무동기살인 등의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불의의 사망, 중상해(重傷病) 또는 장애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구제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급부금을 지급¹⁷³⁾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1년 1월 시행 이래 범죄피해 등의 조기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운용상황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3 >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운용상황¹⁷⁴⁾

171) 즉 그 공판조서는 채무명의가 되어 범죄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는 경우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84면).

172) 이성호 외 2인, 위의 책, 183면;

173) 범죄피해자급부금은 유족급부금, 장애급부금, 중상병급부금으로 구분된다. 유족급부금의 지급 최고액은 2,964만 5천 엔이고 최저액은 320만 엔이다. 피해자가 사망 전에 요양을 요한 경우 의료비의 자기부담 상당액과 유업손해를 고려한 액의 합산액도 함께 지급한다. 장애급부금의 지급 최고액은 3,974만4천 엔이고 최저액은 18만 엔이다. 장애로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에 신체상의 장애로서 법령에 정한 정도로 장애등급은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된다. 중상병급부금의 상한액은 120만 엔이다. 중상병(가료 1개월 이상, 3일 이상의 입원(정신질환에 관하여는 3일 이상 노무에 복무할 수 없는 정도의 증상)한 경우, 의료비의 자기부담상당액과 유업손해를 고려한 액의 합산액을 1년을 한도로 지급한다.(경찰청, 경찰백서, 2009, 205면).

174) 경찰청, 경찰백서, 205면.

구분 \ 연도	2005년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누계
신청에 관련된 피해자수(명) (신청자수(명))	5,568 (8,346)	491 (649)	448 (574)	462 (565)	6,969 (10,134)
재정에 관련된 피해자수(명) (재정건수(건))	5,240 (8,019)	458 (610)	445 (588)	407 (532)	6,550 (9,749)
지급재정에 관련된 피해자수(명) (재정건수(건))	4,948 (7,619)	435 (583)	407 (546)	388 (510)	6,178 (9,258)
불지급재정에 관련된 피해자 수(명) (재정건수(건))	292 (400)	23 (27)	38 (42)	19 (22)	372 (491)
재정금액(백만원)	16,934	1,272	932	907	20,045

3.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일본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는 1980년도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북미와 유럽의 영향을 받아 범죄피해자대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여, 1991년 전국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의 결성, 1992년 동경의과치과대학에 범죄피해자상담실 개설, 1995년 ‘미토(水戸)피해자구조센터’와 ‘오사카 YWCA 피해자상담실’과 같은 민간 피해자지원조직이 결성되었다. 동경의과치과대학에 개설된 피해자상담실에서는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정이나 병원에의 동행, 자원봉사자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시민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강화 등을 추진하였다.¹⁷⁵⁾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 가입한 각 지역조직들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운영되므로 각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로부터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자금은 찬조회원의 회비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이지만,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175) 김재민, 앞의 책, 140면.

경정(競艇)에 의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본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¹⁷⁶⁾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는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가맹단체의 수는 2009년 4월 1일 현재 전국에 46단체 이른다.¹⁷⁷⁾

본부 사무국은 동경의과치과대학 난치질환연구소 사회의학연구부문에 설치되어 있으며,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5명의 이사회가 조직운영의 중심기구로 지원책검토위원회, 연수위원회, 지원활동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주업무는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회에의 계몽 및 교육, 전국의 민간원조조직설립의 추진과 연계, 민간원조조직의 원조담당자의 교육과 연수, 범죄피해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시책의 실현 및 법률정비를 촉진하는 활동, 피해자 및 유족의 자조그룹에의 지원과 연계 등이다.¹⁷⁸⁾

4.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

피해자 및 그 유족 또는 범죄에 의해 직접,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피해자지원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¹⁷⁹⁾

일본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기관·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피해자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⁸⁰⁾

일본경찰청은 1996년 2월 피해자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5월에는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고 각종 정책의 기회·

176) 이성호 외 2인, 앞의 책, 185면.

177) 경찰청, 경찰백서, 204면.

178) 박광민, 앞의 논문, 19면.

179) 경찰청, 경찰백서, 204면.

180) 김재민, 앞의 책, 141면.

조사 외에 피해자대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¹⁸¹⁾

보다 충실한 피해자보호활동 추진을 위하여 2002년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호로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였고, 국가공안위원회고시 제5호로 ‘경찰본부장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원조실시에 관한 지침’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이는 범죄피해자급부법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¹⁸²⁾

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도도부현 경찰은 ‘피해자 안내서’(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법률상 구제절차·피해자연락제도·범죄피해급부제도·각종 상담창구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피해자연락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피의자를 검거한 장소·피의자의 성명·연령·기소 및 불기소 등의 처분결과·기소된 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이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신고 접수 후 약 2개월, 뽕소니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약 3주 후에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 및 피해상담은 ‘교번’이나 ‘주재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요원지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수사경찰관이 아닌 다른 지정된 경찰직원이 전문적인 피해자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

181) 김재민, 위의 책, 145면; 일본은 경찰청장관 관방 급여 후생과 범죄피해자지원실(실장 : 경무관급)이 있고, 경시청 총무부 기획과 범죄피해자지원실(실장 : 경정급)이 조직되어 있다. 인력은 경시청 총무부 기획과 범죄피해자지원실 경시청 38명 중 18명은 일반범죄피해자대상, 20명은 음 진리교 범죄피해자대상 담당한다(재일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182) 김재민, 앞의 책, 141면.

했을 경우에 각종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⁸³⁾ 지정피해자지원 요원은 2008년 말 현재 26,019명이다.¹⁸⁴⁾

나. 일반적인 피해자 상담

중대사건의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심리상담자를 배치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정신과의사와 민간상담자를 연결하기도 한다. 특히 1989년부터는 도도부현 경찰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담전용전화(#9110)를 설치하고 전화에 의한 종합적 상담을 접수하고 있는 바,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성범죄피해·소년문제·악질 상법범죄에 의한 피해·폭력단에 관한 범죄·교통사고 피해 등에 관한 상담 등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상담실의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응접세트를 갖추거나 조명이나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서·파출소 등의 경찰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저항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동식 피해자 진술청취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대책용 차량을 활용해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 그들이 원하는 편한 시간대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여성 수사경찰관의 배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

183) 김재민, 앞의 책, 146면; 柑本美和小西聖子, “効果的な被害者援助の提供をめがして”, 「法律時報」, 第71卷 10號, 1999, 53면.

184) 경찰청, 경찰백서, 204면.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성별의 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경찰본부의 성범죄 수사지도계나 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담당부서에는 여성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수사에 임하도록 해오고 있다. 특히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성범죄수사 지도관’ 및 ‘성범죄수사 지도계’를 설치해서 성범죄수사의 지도·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수사관들의 주요 임무로는 피해자로부터의 사정청취, 증거채취, 증거품의 수령, 병원 진료의 보조, 수사상황의 연락 등이다.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신고 110’의 전화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자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여성경찰관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 428개의 파출소를 여성상담 파출소로 지정하여 여성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여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요망에 따라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도경찰대에 ‘여성피해상담소’를 두고 치한 등의 성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성을 상담하고 그 피해신고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경찰대의 여성피해상담소는 전국에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라. 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피해자가 소년일 경우에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각 경찰서에 피해소년의 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을 하고 있다. 이 때 면접장소는 소년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타인의 접촉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년보호업무 담당자인 직원에게 유관기관에 인계가 필요하면 유관기관에 각각 인계하여 보호할

동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피해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소년 서포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타격을 입은 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보호자와 협조하여 소년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가정을 포함한 주위환경을 조정해주고 적절한 지도나 조언, 카운슬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년 서포트 센터’가 전국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되어 소년 보도직원이나 소년 상담 전문직원을 중심으로 피해소년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마. 악질 상법범죄 피해자의 보호활동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상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과 지도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본부에 ‘악질 상법범죄 피해신고 110번’ 등의 전용 상담전화나 상담청구를 설치해,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해약제도에 관한 지도, 피해회복에 관한 지도, 피해방지대책의 지도 등이다.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의 소비자행정 담당과나 소비생활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제휴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수사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기의 경우는 경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 상담을 행하고 있다.

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활동

교통사고로 인해서 종래에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근래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 ‘교통상담계’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보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요 설명, 피해자 지원조직 및 카운슬링 기관의 소개,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등이다.

또한 뺑소니 사건의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건담당 수사관이 수사상황, 검거상황, 처분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하고 있으나 경찰서에 따라서는 그 통보대상을 중상자에게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또한 경시청 및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교통수사 담당과에서는 교통과에 수사지도관을 배치해 경찰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태 등으로 사정청취를 할 수 없는 사고나 당사자 간 상호 엇갈리는 진술이 있을 경우 진술의 정확성을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 수사를 전개하기도 한다. 또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사정청취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향을 충분히 배려하는 형태의 수사를 하고 있다.

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 외에도 지방검찰청, 변호사회, 의사회, 임상심리사회, 일반 행정기관의 상담기구 등을 총괄하는 ‘피해지지원연락협의회’가 1999년 2월말까지 전 도도부현에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락협의회의 구성으로 인해 각 기관, 단체 간 상호 제휴를 강화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적절한 기관 등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¹⁸⁵⁾

한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긴밀한 제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돕기 위해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 범죄피해자원조단체가 전국에 2002년 현재 2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 상호간 혹은 경찰과 이 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전국피해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185) 柑本美和小西聖子, 앞의 논문, 53면.

각지에서 민간의 피해자지원단체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전화 또는 면접에 의하여 상담, 법원 출석동행 등의 직접 지원, 상담원의 양성 및 연수, 자조(自助) 그룹(유족회 등)의 지원, 홍보계발 등의 활동을 행하고 경찰은 단체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원 등에 의해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범죄피해 등의 조기 경감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는 공적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09년 4월 1일 현재 전국에 23 단체가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다.¹⁸⁶⁾

제6절 프랑스 · 뉴질랜드

1. 프랑스¹⁸⁷⁾

가. 정부의 대책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했던 제도로 피해자 지원관련 정부정책을 총괄한 부서로 피해자권리담당국무비서가 있다. 2)

‘피해자지원국립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위원회로 ‘피해자지원국립위원회’가 있는데 법무부 내에 장관직속으로 두고, 피해자 관련 정책 조율을 위해 매년 회의를 실시하며, 재경, 사회, 노동, 보건, 내무(경찰), 청소년, 교육 등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석한다.

186) 경찰청, 경찰백서, 204면.

187) 재불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각 도청 단위로 구성된 범죄예방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내에 ‘범죄피해자보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피해자 지원관련 정책시행 및 지방정부의 시책을 조정하고,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위원회는 도지사, 검사장, 도의회의장 3인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경찰관계 대표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2005년 10월 창설된 내무부장관 산하의 상설기구로 피해자대리단이 있다. 3명의 경찰관과 3명의 군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무관급이 책임자이다. 경찰 및 군경찰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며, 안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정책적 지원을 한다. 특히, 내무부 내에서 내무부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평가하며,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관련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외부적으로는 피해자관련 사회단체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특히 가정폭력 및 비인간적 대우, 미성년자 보호 등 주제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나. 경찰의 대책

1) 각 도청별로 ‘피해자지원 담당’ 지정

각 도청의 경찰국 방법과 내에 ‘피해자 지원담당’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담당은 피해자 지원협회들과 관계를 형성·유지하며, 피해자의 경찰응접을 개선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집적하며, 수사의 전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형사절차를 확보한다. 담당자의 계급은 경위 내지 경정급이다.

2) 피해자 지원 사무실 운영

이 사무실은 수사·조사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사 중 또는 수사 이외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사무실에서는 범죄장소

에 경찰개입, 범죄피해자의 응접, 필요시 긴급조치의 실시 등 모든 경찰 활동의 적정여부를 감시한다. 시청, 사회단체, 의료부서, 숙박센터 등 여러 관련 단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2008년 현재 97개 도에 323개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3) 피해자지원단체와 협력

중한 사실로 범죄신고를 할 때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관련 양식을 빠짐없이 제공하여 피해자구조 및 알선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피해자 구조단체에 연락처를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144개 경찰관할에서 상시사무소를 개방하고 있다.

4) 경찰서 사회보장직원 배치

39개 도청관할의 69개 경찰서 내에 사회보장직원이 배치되어 범죄피해자에게 사회적 보장관련 지원 및 구조, 절차안내 등을 하고 있다.

다. 파리 경찰청의 특수대책

1) 각 경찰서에 ‘피해자응접관’ 배치

2006년 5월부터 각 구의 경찰서 내에 ‘피해자 응접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를 응접하고, 매일 피해자 응접관련 문제 여부를 점검하며, 타 경찰관에 대하여 모범적 복장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도록 주의한다. 또한 범죄피해관련 각 사회단체와 연락을 유지하며, 시민과 경찰 간의 관계도 담당한다.

2) 각 구청에 ‘범죄예방·홍보임무단’ 운영

이들은 각 구청에 소속되어 자치의원, 사회단체, 범죄관련 각종 관계자들에 대하여 범죄관련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시 긴급 절차 및 개별적 범죄신고에 도움을 제공한다.

3) 외국인 범죄피해자 응접시스템

2004년도에 경찰 내부전산망 내에 창설되어 14개 외국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양식의 범죄피해신고 양식이다.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자국어와 불어로 된 이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06년도 파리시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각 호텔 내에 범죄피해신고양식을 비치하여 호텔 내에서 범죄피해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양식은 ‘외국인범죄피해자응접시스템’의 신고양식과 동일하다.

4) 농아자 피해자 지원

각 구의 경찰서에 농아자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에 대비하여 수화가 가능한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파리 시내 전체 40여 명의 경찰관이 수화가 가능하다.

5) 노인 피해자지원 및 동반서비스

파리 시청 범죄예방과와 협력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제도로 경찰에서 노인의 범죄피해신고를 접수할 경우 관련 사회보장기관에 연락하여 노인피해자를 동반하여 신고를 돕게 하는 제도이다.

라. 법무부 등 타 정부기관과의 협력

1) 무료 상담전화 운영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안내 무료전화를 운영하여, 범죄피해자와 상담하고 관련 민간단체와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피해자지원 사무실 운영

2008년 12월부터 일부 법원 내에 ‘피해자지원 사무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 피해자지원 사무실은 법원 내에 피해자 구조단체인 ‘아르다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사무실을 찾은 형사피해자 등에게 사법적 절차 안내, 사법적 지원이 가능한 단체 안내, 피해자들이 요구할 경우, 그 절차를 동행지원 등을 하고 있다. 사무실이 법원에 부속되어 있는 관계를 피해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검사·사법관·변호사·집달관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법원 사이에 새로운 연계장치가 되고 있다고 평한다.

3)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각 지방법원 내에 설치되어 범죄피해자 및 피해배상요구권자들에 대하여 범죄피해를 보상한다.

4) 범죄피해자대리판사 운영

각 지방법원에 피해자대리판사라는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참작하였는지를 점검하며, 범죄피해자들을 관련 사회기관이나 변호사, 집달관 등에게 안내한다.

5) 형집행사무실

법원 집달관의 사무실로, 집달관은 판사의 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과 관련된 사람, 피고, 피해자 및 그 변호사를 접견하며, 판결을 알려주고,

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 관련 민간단체와의 연계·협력

2005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과 ‘피해자구조 및 중재단체’ 사이에 형사사건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법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변호사협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 변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부터 경찰서에 심리상담가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심리상담가는 경찰, 범죄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범죄피해자에게 경찰활동의 미약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고통을 진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리학 관련 석사급 학위자 중에서 도청 단위로 채용한다. 2006년 6개 지역에서 처음 시작하여 현재 전국 27명이 채용되어 활동 중이다.

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대책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으며, 경찰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계류된 가해자가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협을 검토하여 구속조치한다.

2. 뉴질랜드¹⁸⁸⁾

188) 재뉴질랜드 주재경찰관 보고자료.

가. 기본현황

뉴질랜드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는 ‘범죄피해자지원단체’(Victim Support)에서 담당하고 경찰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은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법률로는 ‘범죄피해자권리법’, ‘가석방법’, ‘죄수 및 피해자청구권’, ‘사고예방재활치료 및 보상법’ 등이 있다.

나. 정부의 대책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는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단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에서 동 단체 운영 예산의 8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1) 피해자자문관 제도

피해자자문관 제도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각급 법원에 상주한다. 재판과정 및 동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자문, 재판상황에 대한 통보, 피해자의 재판참여 지원, 피해자영향진술서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사고보상공사의 지원

사고보상공사에서 피해자 치료, 재활, 상담, 범죄피해로 인한 손실소득의 보전 및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사고보상공사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모든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재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사고로 인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하여 가족들의 생활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3) 손실배상제도

‘선고법’ 제32조 제1항 및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판결선고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및 손실에 대해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상은 벌금 또는 재판비용에 앞서 청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해보상청구제도

‘죄수 및 피해자청구법’에 따르면 검찰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죄수의 피해자는 동배상금이 죄수에게 전달되기 6개월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피해자 가해자간 회의 등

‘선고법’, ‘가석방법’, ‘범죄피해자권리법’, ‘교정법’ 등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기소전 또는 선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간 자발적 화해를 주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 가해자간 회의 및 공동체그룹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의 대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경찰의 주요 역할은 ① 범죄피해신청을 접수 후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및 정부관련 기관에 관련 정보들을 최초로 전달해주고 관련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 ②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해자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 ③ 중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피해자에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관련정보를 통보, ④ 피해자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된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 등이다.

경찰이 제공 가능한 가해자 관련정보는 ① 재판진행상황, ② 보석여부, ③ 출소일, ④ 일시적 석방, ⑤ 탈옥, ⑥ 가택연금(home detention), ⑦ 치료감호(hospital detention) 등이다. 피해자 통지시스템은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에서 동시스템에 등록을 신청하는 중요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이후 교정국 또는 보건부 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수감하는 기관에서 석방, 탈출 등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한다.

다. 법무부 등 타 정부기관과의 협력

현재 필요시 유관기관간 회의에 특별한 협력방법은 없다. 물적, 인적 교류가 없다. 다만 법무부 소속으로 각급법원에 상주하는 피해자자문관 제도가 유일하다. 여당인 국민당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여타 유관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Victims Service Centre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 관련 민간단체와의 연계 · 협력

1)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역할

뉴질랜드에서는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의 위기(주로 정신적 충격) 관리·상담제공·필요한 관련 서비스 자문, 수사 및 재판의 전과정을 통한 지원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자에 대한 옹호, 가석방청문회와 관련된 지원, 살인피해자가족을 위한 계량적 보조금, 재판참석을 위한 여행경비의 지원 등이다.

2) 연계협력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단체는 공식 협력 약정(MOU)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지역 사무실은 주로 경찰서에 의해 제공되며, 대부분의 피해자 관련 사실 통보도 경찰에 의해 제공된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지원한 총 70,896건 중 경찰이 68,952건을 통보하여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3) 재정확보

법무부로부터 소요 재정의 80%가 지원된다. 경찰에서는 사무실(전국 48개 지원)제공, 여타 재정은 공동체로부터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4) 자원봉사

범죄피해자지원단체는 전국 45개소에 100여 명의 상주직원과 전국에 걸쳐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24시간 피해자전화 및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한 임상심리사 등 운영현황

경찰서에서는 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자지원단체에서 제공한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살인 또는 강력사건에 노출된 경찰관들의 정신적 충격 치료를 위해서 임상심리사들 일부와 계약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대책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은 없으며, 다만 형사사건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된 별도의 보호팀은 존재한다. 즉 필요시 범죄피해자의 경우 증인보호팀에 의해서 보호된다.

제4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방향

제1절 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모든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 구분된다.¹⁸⁹⁾

일반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2003년 구미·김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과 경찰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서포터제도·케어팀 제도의 운영으로 이해되고, 특정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117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⁰⁾

현행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7731호, 2005.12.23, 제정),¹⁹¹⁾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7766호, 2005.12.29, 일부개정),¹⁹²⁾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2008.6.13, 일부개정),¹⁹³⁾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6호, 2008.12.19, 일부개정

189) 박광민a, 앞의 논문, 6면.

190) 박광민a, 위의 논문, 7-14면.

191)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¹⁹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668호, 2009.5.8, 일부개정)¹⁹⁵⁾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¹⁹⁶⁾

제2절 범죄피해자 지위보장과 피해회복 지원

194)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 주요내용은 가.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법 제2조 :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함),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법 제4조·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연구·홍보 및 교육,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함),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법 제12조 및 제13조 :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15조 :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에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참여시킴), 마.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법 제17조 :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이다.

1. 의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은 범죄피해자의 지위보장과 피해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적극적 지위와 소극적 지위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지위 보장은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참여확대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의 참여 확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강화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고지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소극적 지위 보장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확보와 그리고 일상생활과 언론 등으로부터의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의 확대,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상 화해제도 등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회복 제도를 마련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2. 형사피해자의 지위보장

가. 형사피해자의 적극적 지위 보장

1) 수사절차에서의 참여확대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고소권자의 권리로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권리로서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소인 등은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제258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고소인 등에게 처분고지¹⁹⁷⁾가 인정된다. 또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59조(고소인등에게 공소불제기이유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¹⁹⁸⁾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관하여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제1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 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에 관하여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260조는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여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

197)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98)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고 헌법재판소법(법률 제8893호, 2008.3.14, 일부개정)은 제68조에서 청구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¹⁹⁹⁾”(제1항)고 하여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강화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²⁰⁰⁾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3)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로서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199)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00)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고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를 인정하고 있는 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3항).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나. 형사피해자의 소극적 지위보장

1) 수사·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퇴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제221조는 제3자의 출석요구 등을 규정하여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검사 등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배려를 인정하고 있다. 제165조의2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으로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확보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294조의3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규정하여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

3) 언론 등으로부터의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20세기에 들어와 언론 사업이 독점화·집중화하면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노출이나 사진의 무단게재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의 침해나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은 범죄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어 새로운 고통을 안겨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⁰¹⁾

언론 등의 범죄사건의 보도에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보도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사건이나 친족 간의 범행 또는 성범죄 등은 그 선정성 때문에 언론보도의 표적이 된다.²⁰²⁾ 언론에 의한 피해유형에는 ① 피해자의 성명, 나이, 직장명, 집주소 등 모든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② 성은 밝히지 않고 이름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는 직장주소, 직장명 등을 적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성폭행 당한 소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본인을 알게 하는 경우, ④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고 있는 업소 등을 공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언론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보도를 위한 기사편집을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

201) 1997년 2월 17일 한 일간신문이 ‘이한영씨 피살사건 이후 목격자 증언’ 이라며 목격자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것은 수사나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관련범죄로 인해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신원공개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이윤추구와 타 신문사와의 경쟁 심리로 인해 자극적이고 흥미위주로 사건을 보도하다보니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지는 것이다(김재민, 앞의 책, 388-389면).

202) 피해자 C의 가족과 이웃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에는 무신경한 채 제작진의 기회주의에만 초점을 맞춘 흔적이 역력했다. 인터뷰 대상의 얼굴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그 밖의 신체부위와 옷차림 등은 그대로 노출되었고 육성도 방송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면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C와 그 가족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지와 이웃들의 호기심과 ‘반감지 않은’ 동정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김용세, 앞의 책, 275면).

는 어떠한 사항도 보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²⁰³⁾

경찰은 이처럼 무력하게 노출되는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²⁰⁴⁾ 범죄피해자는 경찰수사의 협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

가. 민간과 국가기관의 피해자지원책 연계

법무부는 범죄피해 직후부터 상담, 의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알선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련의 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일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직면한 문제에 상응하는 상담 및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심리치료기관, 변호사회, 의사회 등 민간단체 상호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범죄피해자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상호 업무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직접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 자원봉사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

203) 김재민, 앞의 책, 390면.

204) 김용세, 앞의 책, 275면.

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내 범죄피해자 상담전문가, 자원봉사자 교육·육성 프로그램 개발·실시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방안을 위해서는 재정확충 방안과 관련 실천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나. 민간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단체의 지원

전국 57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 연계를 추진하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등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직적인 전문 인력이나 체계 구축을 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원의 인력풀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적절한 네트워크결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맞는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조직화·전문화하여, 둘째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보다 효율성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고, 셋째 자발적 참여와 전문적인 교육체계의 운용으로 양질의 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하고,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법을 검토한다.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게 보조금 교부, 국·공유재산의 대부, 조세감면 조치와 혜택, 우편요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육성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미등록 지원법인과 비법인 민간단체의 법인화 및 등록을 통하여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정인

기능을 연구 검토하며, 범죄피해자 등의 상담내용에 따라 최적의 전문기관, 단체 및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정통한 전문가를 소개하는 조정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신청 등에 대한 적절한 운용과 수수료징수, 사기업·영리기업화 하는 등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과 취지로부터 이탈하는 등 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될 때 그에 상응한 조치 강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절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

1.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

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운영

CARE Team(Crisis 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의 정식명칭은 피해자심리 전문요원이다. CARE팀은 범죄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의 위기개입·지원·대응팀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심리상담 경력을 가진 전문경찰관(경장 특채)으로 정신적 충격이 심한 범죄(주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돕고 있다.

2006년 8월 3일 11명을 선발하여 2009년 현재 서울(3인), 부산(2인), 대구(2인), 인천(2인), 경기(2인)지방경찰청의 강력계나 폭력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를 찾아 심리평가와 상담을 통해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지

원을 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상담한 피해자의 사후관리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일선 경찰관의 교육·자문,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계 유지·확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²⁰⁵⁾

2008년 한 해 동안 살인·성폭력·강도 등 총 438건 554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정보제공·지원단체연계·심리평가 등 총 2,521회의 보호·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피해자 대부분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⁰⁶⁾

< 표 4-1 >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죄종별)

(단위 : 건)

계	구분	살인	성폭력	강도	폭력	방화	기타
438		57	123	77	42	4	135

< 표 4-2 > 200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활동별)

(단위 : 회)

계	구분	현장출동	심리평가	상담	정보제공	단체연계	기타
2,521		152	144	1,083	817	211	114

나. SMS자동통지시스템 운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권비보호 및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종결 등²⁰⁷⁾ 수사단계별 사건진행상황이 피해자

205) 경찰청, 「CARE팀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희망으로의 한걸음」, 2007, 1-2면.

206) 경찰청, 2009 경찰백서, 175면.

207) 주요 통지내용은 1.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명 및 사건접수번호, 2. 피의자 검거사실 등

의 휴대폰으로 자동 통보되는 ‘SMS자동통지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다. 기존 우편통지 대체에 따른 예산절감과 서류작업 감소 및 신속·정확성 등 편의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2006년 1월 SMS 자동통지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2,847,482건을 발송하여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수사행정의 신뢰·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표 4-3 > 2008년 SMS통지시스템 통지 현황

구분	계	접수	이송	중간통지	송치 및 종결	기타
통지실적	2,847,482	751,867	77,186	1,089,610	894,924	33,895

다. 통합피해자안내시스템 운영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보호·지원정보의 제공을 위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연계하여 ‘통합피해자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피해자안내시스템’에는 살인·강도 등 범죄유형별 수사절차 안내 총 8종,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총 14종, 대방사회복지관 등 피해자지원기관·단체 총 2,926개소가 DB에 저장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형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피해자 안내서’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2007년 3월 통합피해자안내시스템 구축 이후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103,031,136건의 지원정보 검색 및 안내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라.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3. 타 관서 또는 타 경찰관으로 사건이송 여부, 4. 사건종결시 송치 일자 및 종결사유 등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이다.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는 2004년 9월 경찰청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서포터는 초동수사시의 지원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후 지원활동도 매우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208)

일선 수사부서 근무자들은 수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운용되어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는 나름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209)

2.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제도의 방향

가. 의의

범죄와 관련된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의 진압 내지 범죄인을 검거함으로써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세계적 추세로 강화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역할의 수행도 주요 임무로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으로 접촉한다거나 피의자의 주변 인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내 이웃 또는 내 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이 국민의 탄압하는 대표적인 국가 권력 기관으로 이해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국가란 국민의 기본권을 법을 수단으로 침해하는 국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인권보장적 헌법의 제정과 헌법에 근거한 다양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찰도 이러한 국가기관의 하나임은 당연하며, 경찰의 활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앞장 설 때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경찰, 국민 속의 경찰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208) 김재민, 앞의 책, 296면.

209) 김재민, 위의 책, 298면.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의 방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범죄의 발생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당연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범죄피해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경찰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 임무가 될 것이다.

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확대

CARE Team의 활동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정책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죄의 초동수사와 함께 피해자와 가장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경찰에서 CARE Team의 역할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5개 지방경찰청에 한하여 배치되어 있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우선 16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경찰서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다. 민간지원단체의 연계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에 의해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무실이 검찰청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접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²¹⁰⁾ 특히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피해를 입은 직후라고 보기 힘들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범죄피해에 대한 감정이 줄어든 상태로 이해한다면 범죄피해자에

210) 부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은 사무실을 검찰청사 내부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외부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심연주, “범죄피해자 care의 실제-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자료, 2009, 31면)

대한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지난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형사조정제도²¹¹⁾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의 형태가 강하게 나타나는 형사적 분쟁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²¹²⁾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법률지원·의료지원·연계지원·현장지원·범죄피해자 생계지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³⁾ 이러한 활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담당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범죄피해자가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가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을

211) 형사조정에서 ‘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당사자의 능동적 역할을 전제로하고 합의도출을 지향하지만 화해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와는 다르다. 즉, ‘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의 이념을 보다 객관화한 변형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해되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형사조정은 형사화해 또는 조정뿐만 아니라 독자적인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자활 프로그램 형태의 회복적 조정 내지는 사회적 조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장규원·윤경희,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 32-33면).

212)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가해자에게는 자발적 책임인수 기회의 부여와 더 나아가서는 교화개선의 기회 가능성을 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는 평화와 사법기관에는 사건의 조기 종결이나 사법 비용 지출 감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과 같은 실질적 효과 부여와 함께 제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장규원 외 1인, 위의 논문, 46면).

213) ① 법률지원은 검찰 및 법원, 변호사사무실 등 피해자 동행, 형사사법 정보제공, 변호사 연계 등, ② 의료지원은 병원 연계 및 의료비 지원 협조요청 등, ③ 연계지원은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 등 피해자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단체연계, ④ 현장지원은 살인이나 폭력 등 범죄피해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 및 가족들이 현장을 치우면서 받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무료정리지원활동 등, ⑤ 범죄피해자 의료법률생계지원금 지급 등은 병원비, 소송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지급 등이다(심연주, 위의 논문, 32면).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외부에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접촉이 용이한 경찰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민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범죄피해자지원부서 확대

현재 경찰조직상 범죄피해지원부서는 수사국 산하의 인권보호센터 범죄피해자대책계이다.²¹⁴⁾ 그러나 점차 범죄피해자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과 수사기관에서의 범죄피해자 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론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처에 있어서 각종 법률지원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원 증원하여 확대 개편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실의 실장이 경무관급이 맡고 있는 일본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4) 피해자대책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종합 및 조정
 - 피해자심리전문요원(케어팀) 및 피해자서포터 등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 관련 업무
 - 강력범죄 피해자 (유)자녀 지원사업 운영
 - 통합피해자안내시스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경미범죄 피해 접수·상담·조치 통보를 위한 익명신고방 운영
- ② 범죄피해자 관련 홍보 및 교육 지도
- ③ 경찰청 남영동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인권교육장 및 세미나장 대여
 - 인권 관련 전시공간 조성·운영

제5장 결론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의 중심은 범죄피해자가 입은 범죄피해에 관한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입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 수 있는가는 당연히 가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범죄인은 피해자에 피해회복에 관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지어 범죄인 자신의 처벌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경향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피해 외에도 새로운 범죄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범죄와 관련한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대 이후 국가와 학계는 범죄피해자를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전까지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외국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과 경찰의 역할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은 핵심은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체도를 확대·강화하는 것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민간피해자보호단체의 지원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적 관점에서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하며, 후자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나라 경찰의 입장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방향은 우선

범죄의 예방을 통하여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치안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회가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수사절차에서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자와 범죄피해자를 동일한 관점인 제3자적 입장에서 관리 및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인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로 취급하여서도 안 되지만, 범죄피해자를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나 형사절차상 참고인 정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방법과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과 같이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연계방법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 넓게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CARE팀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희망으로의 한걸음」, 2007.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치안연구소, 2002.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이형국·박영규·오영근·이영근·이훈동·장규원·조균석·윤옥경·이수정·허경미, 「범죄피해자학의 이론과 실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2005.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2002.

2) 논문

민건식,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1992.

박광민a,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박광민b,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 6호, 1998.

송명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오경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장규원,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3.

2. 외국문헌

警察政策研究センター, 「米國政府の被害者對策-司法省犯罪被害者室活動報告書から-」, 1999.

柑本美和小西聖子, “効果的な被害者援助の提供をめがして”, 「法律時報」, 第71卷 10號, 1999.

警察廳, 警察白書, 2009.

宮澤浩一, “犯罪被害者救済の現状と最近の動向”, 「法律のひろば」5, 1999.

小川太郎, “犯罪被害者に對する國家賠償”, 「犯罪被害者補償制度」, 1976.

藤本哲也, 「刑事政策概論」, 青林書院, 1998.

M. Fry, "Justice for victims", The Observer, London, 1957.

Peggy M.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Carolina Academic Press, 2001.

Sandr Walklate, *Victimology, The Victim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1989.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Final report*, December 1982.

William G. Doener. Steven P. Lab. *Victimology, Second Edition*, 1998.

책임연구보고서 2009-21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